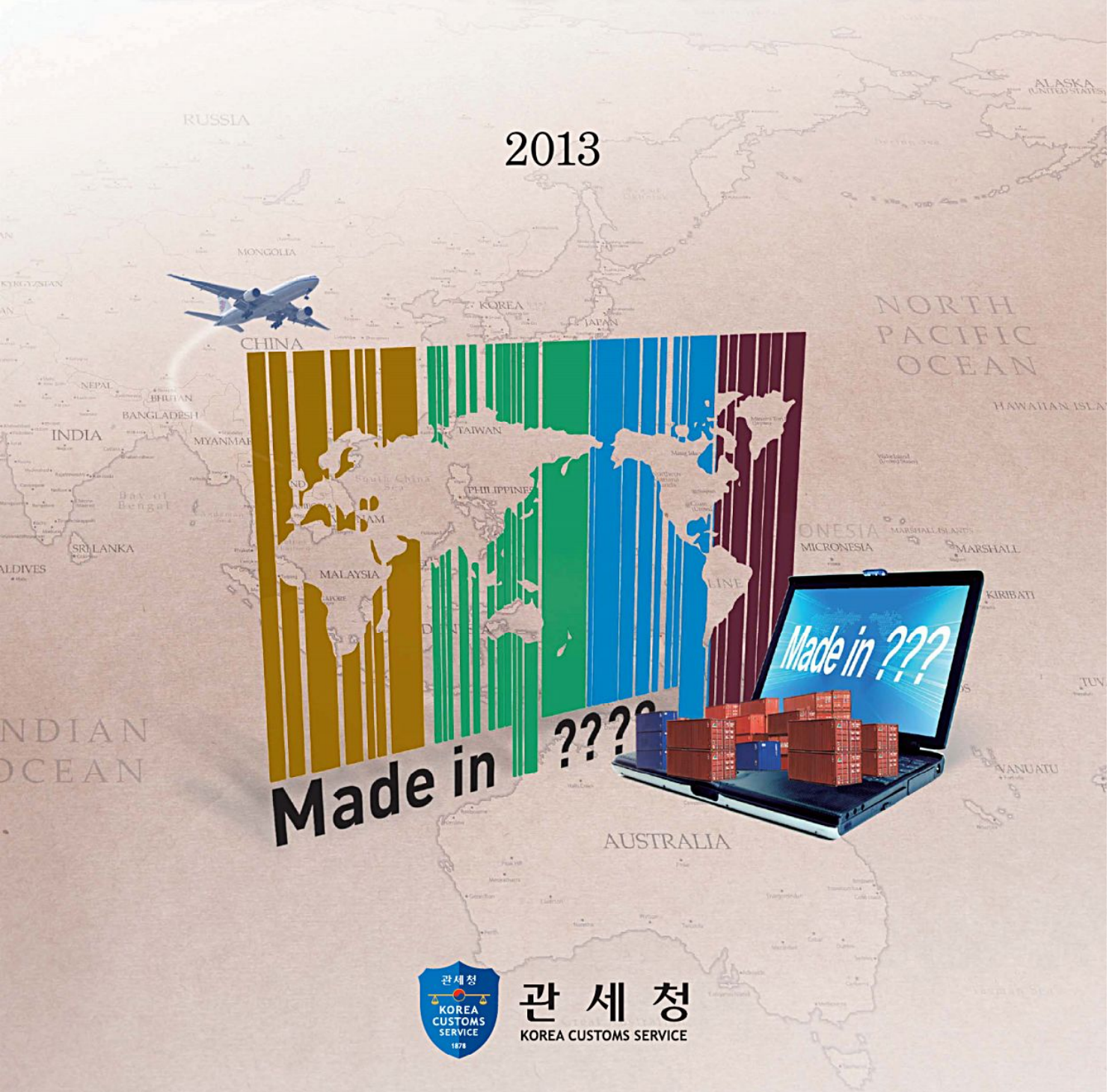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201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세계 각국은 자국 소비자보호와 무역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를 묵인하는 국가에 대해 불정정 무역국가로 지정 그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무역보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1년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2007년 4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의 단속범위가 기존 통관단계에서 시중유통단계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과징금부과 상한액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원산지표시관련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FTA 확대 등 국제무역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허위 또는 오인표시하는 사례 등으로 원산지표시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관세행정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1년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이후 최근까지 질의회신 사례를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 판정, 원산지표시 지침으로 분류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쯏록 본 책자가 원산지표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활용되어 관세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 12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 찬 기

목 차

I. 원산지표시 방법

종 류	연번	제 목	페이지
농림수산물	1	냉동새우 오인표시 여부	11
	2	육류 원산지표시	12
	3	토종돼지 등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14
	4	벌크상태 소금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15
	5	수입 식품류의 원산지표시사항	16
	6	사탕 과자류 원산지표시	17
	7	원두커피의 원산지와 함께 원두생산국 병기 가능 여부	18
섬유가죽류	8	머플러의 원산지표시 방법	19
	9	우산 TAG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20
	10	작업용 면장갑 비닐포장상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21
	11	홀림체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22
	12	이중 라벨의 인정 여부	25
	13	“Licensed By” 라벨표시 인정 여부	26
	14	여성용 스타킹 원산지표시	27
	15	지갑·벨트류의 원산지표시 철저 요청	28
	16	편직물 수입후 국내봉제한 팬티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29
	17	케시미어 머플러 스티커표시 인정 여부	30
	18	신발의 원산지표시위치 및 방법	31
	19	백화점 등 쇼핑센타 진열상품에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32
	20	별도의 라벨로 표시한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33
	21	재수입된 수입의류용 옷걸이 원산지표시	34
	22	포장용 가방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35
	23	의류를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시 원산지표시 방법	36
	24	직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37
	25	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 포대 원산지표시	38
	26	장갑 수입후 국내에서 코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39
	27	신발 양쪽에 모두 원산지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40
생활용품	28	안경테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41
	29	두발용 제품의 원산지표시	43
	30	도자기 원산지표시	44
	31	목재완구 원산지표시	45
	32	목재계단 원산지표시	46

종 류	연번	제 목	페이지
생활용품	33	머리영양제 원산지표시	47
	34	실험용 폴리스틸렌 튜브 원산지표시	48
	35	등산용 아이젠 원산지표시	49
	36	소꿉놀이세트 원산지표시	50
	37	성배잔 원산지표시	51
	38	크리스마스용품 원산지표시	52
	39	고무제 문풍지 원산지표시	53
	40	커피잔세트 원산지표시	54
	41	원자력발전소용 방호복 및 부속품 원산지표시	55
	42	전구 몸체에 원산지표시한 경우 적정 여부 판정	56
	43	어린이용 운동기구 원산지표시 적정 위치	58
	44	Made for Japan 오인표시 해당 여부	59
	45	목각제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	60
	46	목제 주방용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	61
	47	드럼용 스틱 원산지표시 방법	63
	48	철강제 주방용품 원산지표시 방법	64
	49	주사기 수출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65
	50	목욕장갑 비닐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66
	51	보온병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67
	52	펄프제 계란판(난좌)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68
	53	종교단체에서 판매·배포할 목걸이의 원산지표시	69
	54	조화·화환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70
	55	화장실용 도자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71
	56	우산/양산의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	72
	57	플라스틱 그릇 포장위에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73
	58	인공스키장 건설용 바닥재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74
	59	머리띠를 카드보드에 감아 연결 후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75
	60	일본산 방석으로 국내 제조한 자동차카바의 원산지표시	76
	61	벨트 원산지표시 방법	77
	62	케이스에 포장된 삼파장전구의 원산지표시	78
	63	의료용구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79
	64	꼬리표(Tag)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허용된 경우	80
	65	볼펜 S.Africa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81
	66	실리카겔의 원산지표시 방법	82
	67	수출용양말 포장박스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83
	68	캡슐토이 및 꼬마인형세트 원산지표시 방법	84
	69	택배용 Air Cap 봉투 원산지표시	86

종 류	연번	제 목	페이지
생활용품	70	의료용액 포장용기 원산지표시	87
	71	마우스패드 부착용 손목보호대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88
	72	줄자 원산지표시	89
	73	꿀병 제조용 플라스틱 Blank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90
	74	포장용 지제 박스에 국내생산 본제품의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91
	75	색연필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92
	76	주방용품의 스티커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93
	77	수입목기의 원산지표시	94
	78	장신구(귀금속)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95
	79	자연산 식물로 만든 제품의 원산지표시	96
	80	페인트제조용 수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97
	81	국내제조 나무축구공에 사용할 좌대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98
	82	소형 신변장식용품의 원산지표시	99
	83	세트로 구성된 목재퍼즐의 원산지표시	100
	84	국내에서 케이스등과 단순결합될 소형 귀마개	101
	85	세트로 구성되는 악기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102
	86	화장용 분무기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03
	87	방석류 원산지표시 방법	104
	88	1회용 포장용기 원산지표시 처리 지침	106
	89	주방용 칼이 진공 포장된 경우 최소포장 허용 여부	108
	90	냄비뚜껑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09
	91	골프채의 적정 표시방법 처리지침	110
	92	골프클럽의 음각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111
	93	골프백의 적정한 원산지표시 위치	112
	94	골프채 부품품 수입통관시 원산지표시	113
	95	조립식 가구의 정의	114
	96	침침장 최소포장 인정 여부	115
기계류	97	자동차용 안전유리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16
	98	컨베이어 부품품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17
	99	전동공구 원산지표시	118
	100	자동차의 적정한 원산지표시 위치	119
	101	제조업체 납품용 베어링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120
	102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21
	103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표시	122
	104	소형 모형자동차의 원산지표시	123
	105	볼베어링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24

종 류	연번	제 목	페이지
전자전기 제품	106	전자제품과 같이 수입되는 케이블의 원산지표시	125
	107	트랜지스터 원산지표시	126
	108	소형청소기 원산지표시	127
	109	휴대폰 원산지표시	128
	110	반도체모듈 포장박스 원산지표시	129
	111	통신장비용 보드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30
	112	케이스와 발전기만 있는 후레쉬부품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131
	113	전기제품 안정인증서에 의한 원산지표시	132
	114	위성수신기용 리모콘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33
	115	소형분수대 바닥 또는 박스에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134
	116	유아용학습기 원산지표시	135
	117	수출용TV 부품인 스피커의 원산지표시 면제	136
	118	전기곤로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137
	119	오디오용 리모콘의 원산지표시	138
	120	반도체와 반도체모듈에 적용하는 원산지표시	139
	121	원산지가 상이한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140
기타	122	공장그림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141
	123	국가명 뒤에 국가연합체 표시의 적정 여부	142
	124	설명문 중간에 “Crafted in 국가명” 허용 여부	143
	125	Assembled in 표시 허용 여부	144
	126	수출용 부속품 수입국 언어표기 가능 여부	145
	127	‘Crafts and Fashion’의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146
	128	필기체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147
	129	수입물품 국내 단순가공시 원산지표시	148
	130	원산지 “Macao” 인정 여부	149
	131	견본용의 정의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 여부	150
	132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후 대외무역상 처벌면제 여부	151
	133	원산지 미표시건에 대한 처벌 적정성 여부	152
	134	유럽연합 역내산 제품의 원산지표시 EU 허용 여부	153
	135	일본어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154
	136	연구개발용품(실험실용 소모품)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55
	137	원산지 면제 규정상 실수요자의 범위	156
	138	건설용 원부자재 표시면제 여부	157
	139	타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 인정 기준	158
	140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159

II. 원산지 판정

종 류	연번	제 목	페이지
농림수산물	1	냉동해삼 등의 원산지 결정	163
	2	쥐치포의 원산지 결정	165
	3	원양어획 참치를 중국에서 뼈제거시 원산지 판정	166
	4	황태채(북어채),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167
	5	냉동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煮熟)하는 경우 원산지	168
	6	볶은(로스팅) 커피의 원산지	169
	7	밀가루 제조공정의 단순가공 여부	170
	8	원료소금을 수입하여 재제염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171
	9	위스키 원액을 수입하여 생산된 양주의 원산지	172
섬유가죽류	10	3등분 봉제 가방 부분품의 원산지 결정	173
	11	스카프의 원산지 결정	174
	12	의류반제품 수입 후 봉제수출품의 원산지	176
	13	스웨터 임가공 원산지 사전확인	177
	14	봉제후 임가공(마도메)한 의류의 원산지 판정	178
	15	신발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표시위치	179
	16	양말의 원산지	180
	17	최종 포장되지 않은 양말 원산지 판정 및 표시 대상 여부	181
	18	의류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 관련 검토	182
	19	중국산 봉제의류의 원산지관리규정상 조사의뢰	183
	20	북한에서 제조한 장갑의 원산지 문의 회신	184
	21	한국재단 후 중국봉제하여 수입시 원산지 및 감면 여부	185
	22	해외 임가공 넥타이의 원산지	186
생활용품	23	대리석의 원산지 결정	187
	24	선글라스 원산지 판정 및 면세점 판매분 표시대상 여부	188
	25	국내산 타포린 원단으로 중국제조한 천막의 원산지	190
	26	악기 국내조립 후 국산둔갑행위 방지 요청	191
	27	수입 점착테이프를 국내 절단포장시 원산지 판정	192
	28	독일산 화장품원료를 수입 국내 소분·성형시 원산지 판정	193
	29	국내인쇄 후 중국 절단가공카드의 국산표시 가능 여부	194
	30	주요 부품을 수입후 국내조립 생산시 원산지 결정	195
	31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악기의 원산지	196
	32	2개국 이상에 걸쳐 가공된 가스라이터 원산지	197
	33	다국적회사가 제조한 담배의 원산지표시	198
	34	원산지허위표시 물품의 반송	199
	35	골프공의 원산지	201

종 류	연번	제 목	페이지
생활용품	36	화장품 내용물 수입후 국내에서 포장하는 경우 원산지	203
	37	시계의 원산지표시	204
기계류	38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결합생산시 원산지표시	205
	39	일본산 철판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톱날의 원산지	206
	40	둘 이상의 국가 부품으로 완성한 예초기의 원산지	207
전자전기 제품	41	공기청정기용 필터 해외 임가공시 원산지	208
	42	중국산 전화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조립시 원산지표시	209
	43	이동전화 충전기 원산지 결정	210
	44	고분자콘덴서 국내외 가공시 원산지 결정	211
	45	보일러용 온도조절기 임가공시 원산지 결정 및 관세감면 여부	212
	46	메탈할라이드램프 중국임가공시 원산지 판정	213
	47	우리나라 부품으로 중국임가공한 MP3플레이어 원산지 판정	214
	48	외국산 스피커부품 국내조립시 국산 인정 여부	215
	49	임가공수출시 신고한 HS를 재수입신고수리시 인정 여부	216
	50	면도기날 등 부품공급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가능 여부	217
	51	휴대폰 해외임가공 수입시 원산지표시 방법	218
	52	국산 셀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팩	219
	53	미완성 전기안마의자 수입후 최종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220
기타	54	환적물품 원산지허위표시의 법규저촉 여부	222
	55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223
	56	여러나라 부품을 사용 조립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224

Ⅰ . 원산지표시 방법

○ 농림수산물 / 11

○ 섬유가죽류 / 19

○ 생활용품 / 41

○ 기계류 / 116

○ 전자전기제품 / 125

○ 기타 / 141

■ 질 의

- 수입물품 : HS 0306.13, 냉동새우, 냉동새우살
- 포장박스 앞면 상단에 회사 상표인 “대한민국 대표수입새우 DIAMOND”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에게 원산지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5~10cm정도 떨어진 포장부분에 “원산지 : 중국”을 표시하였으며, 포장박스 옆부분에 식품위생법상 표시를 하면서 “원산지 : 중국” 등으로 표시하였음. 식품위생법상 표시는 포장 뒷부분(하단)에 하는 경우도 있음

Q 걱정안 원산지표시인지 여부

■ 회 신

- ‘대한민국 대표수입새우’라는 표시는 원산지로인을 초래하나 원산지가 그와 가까운 곳에 표시되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 다만, 식품위생법상 표시를 하는 곳에 표시된 “원산지 : 중국”의 글자체는 너무 작으므로 10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대표새우 DIAMOND”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1조(현행 제34조)의 허위표시 내지 제5-2조(현행 제35조)의 오인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대한민국 대표 수입새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팀 (02-2110-4838)에 문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1조(현행 제34조), 제5-2조(현행 제35조)

■ 원산지표시 방법

Q 1. 원산지표시의 사용 가능 언어는?

- 한국어, 영어, 한국어/영어 모두 사용가능함

Q 2. 원산지표시의 정확한 표기방법?

- 육류의 경우 'Product of U.S.A'가 정확한 표기임. 다만, 박스내부 육류를 포장한 비닐의 경우는 표시의 어려움을 고려 'U.S.A Inspected' 또는 'U.S.A'가 들어간 축산물검역인도 허용한 것임

Q 3. 글자의 최소크기는?

- 글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함. 따라서 아무리 작아도 8포인트 이상은 되어야 하며, 국가명·상호·설명 등으로 인해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함

Q 4. 원산지표시의 색깔은?

- 원산지표시에 색깔제한은 하지 아니함. 다만, 바탕색과 비슷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아니함

Q 5. 스티커/스탬핑/낙인 모두 허용되는지?

- 원산지표시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함
 - 스티커의 경우는 냉동/냉장 과정에서 접착력이 떨어져 별다른 노력없이 제거가 용이하므로 접착력이 상당히 높아야 함
 - 스탬핑의 경우 수성잉크를 사용하거나 응고가 잘되는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물)이나 접촉에 의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신나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제거되지 않도록 견고성이 있어야 함
 - 낙인의 경우 압력이 낮은 경우 바탕색과 구별이 되지 않고 특히 육류의 경우는 그대로 부풀어 오르게 되므로 적정하지 아니함

Q 6. 모든 내부 개별 패킹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 내부 개별포장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별포장마다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함. 다만, 종이박스와의 접촉과 오염을 막기위해 봉인하지 않고 고기를 둘러 놓기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필요 없음

■ 벌크 제품

Q 1. 만약 비닐패킹이 봉인된 경우 포장표면에 원산지표시가 요구되는지?

- 비닐패킹이 봉인된 경우에는 박스 제거 및 원산지표시 변경이 쉬우며 패키aging을 최소포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패키aging상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함

Q 2. 도제 또는 사분도제, 예를 들면 다리짱과 같은 경우 그 위에도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지

- 도제, 사분도제 등의 경우에는 식용의 축산물검역인을 날인하는 것이 관례이며, 당해 제품을 거래하거나 절단하는 경우 원산지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축산물검역인을 날인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

■ 스티커 접착 가능 여부

Q 1.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요구되는 정보는?

- 원산지만 표시한 스티커는 제거하기 용이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식품위생법 등의 표시를 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 식품위생법상 표시내용에는 최소한 품명, 규격(성분), 원산지, 수입자, 연락처(전화)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다른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 이때, 원산지를 표시한 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인정되지 아니함

Q 2. 스티커의 재질은?

- 스티커 재질은 종이, 비닐 어떤 것이라도 가능함. 다만, 냉장/냉동 운송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충분한 접착력을 가져야 함

Q 3. 스티커의 표준은?

- 스티커의 표준을 정한 바는 없음. 다만,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따라서, 글씨가 너무 작거나 다른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가 있으면 인정되지 아니함
 - 또한 원산지표시 글씨는 명조체·고딕체 등의 활자체이어야 하며 알아보기 어려운 흘림체나 디자인체 등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Q 4. 바탕색의 글씨체가 용인되는지?

- 바탕색과 비슷한 색의 글자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스티커의 경우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질 의

- (주)○○마케팅이 벨기에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삼겹살)에 한글로 “토종 돼지”의 표시를 박스에 하였음
- 원산지표시는 포장박스 전체 8면중 2군데에 “made in Belgium”이라고 표시 되어 있으나 다른 상표없이 “토종돼지”라고 표시된 경우 원산지로인표시로 볼 수 있는지?
- “토종돼지”를 상단에 “벨기에산”이라는 표시를 넣어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기한 경우는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벨기에산 토종돼지”와 같이 “토종돼지”라는 문구 앞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제1호(현행 제3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인표시에 해당하므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 의

- 수입자는 멕시코산 천일염을 수입하여 정제업자에게 판매하며 동 정제업자는 불순물을 제거 정제염을 생산한 후 소매포장하여 국내 판매함

Q 이때, 산물상태의 소금을 트럭에 적재하여 반출할 때 용기가 없으므로 트럭에 팻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소금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나 산물상태의 소금은 용기가 없어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제1호,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
- 수입 후 산물상태로 가공(재포장)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가공업자가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양수자에게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의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산물상태의 소금 운반차량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

■ 질 의

- 중국에서 반이상 익힌 고구마를 수입하려고 함

Q 2Kg씩 비닐에 포장하고 다시 카톤박스에 포장하려고 하는데 최소포장 단위에 라벨표시가 되어야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반드시 한글로 입력해야 하는지 또한 중국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표시에도 되는지?

■ 회 신

- 외국에서 식품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의 적정성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고구마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작업은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전에 보세구역에서 할 수도 있으나 수출국의 생산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생각됨
- 기타 식품류에 대한 표시사항은 “식품 등 표시기준(식품안전청 고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질 의

- 수입물품 : HS. 1704.90, 사탕류(멘토스) 사워믹스 포도·그린애플·파인애플맛
- 그 동안 식품위생법상 표시의 원산지표시 글씨가 작아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Q 포장디자인을 새로하여 바코드 왼쪽편에 12포인트 고딕체의 굵은 글씨 (정자체)로 아는 경우 인정여부

■ 회 신

- 식품위생법상 표시에 있는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어려우나, 바코드 옆에 고딕체의 12포인트이상의 굵은 정자체로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조금만 찾아보면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인정가능함.
- 다만, 진한글씨체로 표시하되 바탕색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글씨체 주위를 흰색으로 둘러싸는 등의 표시방법이 필요함



■ 질 의

-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신

- 로스팅한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로스팅 국가로 표시해야 하며, 커피 원산지와 함께 원두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시방법이 아님
- 그리고, 원산지표시외에 콜롬비아산 원두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음

■ 질 의

- 당 관세사무소에서 수입통관 대행 예정인 중국산 아크릭(100%) 머플러의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여부가 애매하여 적정여부를 질의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5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식각 등의 방법으로 하되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상기 물품은 두께가 얇고, 현품상에 박음질할 경우 제품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원산지표시된 섬유질의 스티커를 부착시켰으며, 별도로 원산지 표시된 태그(TAG)도 부착

Q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 여부

■ 회 신

- 스티커 및 꼬리표(TAG)는 견고성이 약해 시중유통단계에서 제거가 용이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용인되는 원산지표시방법임
- 시중에 유통되는 머플러를 보면 라벨의 양옆을 각각 4-5바늘정도씩 견고하게 바느질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도 소매끝부분에 'Hand Made'라는 라벨의 양옆부분을 바느질하여 부착하고 있음을 볼 때 라벨부착으로 물품이 훼손된다는 이유는 인정하기 곤란함



질 의

- 일본 ○○사가 중국에서 OEM생산한 우산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는 바, 본 상품에는 TAG Label형식으로 원산지는 물론, 제조사, 연락처, 재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으며 일본세관에서 수입허가를 받아 일본내에 유통하고 있는 상품임
- ○○세관은 본 물품에 대해 TAG을 제거하고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잡이부분에 원산지표시 요구를 하였는 바, 우산이 비록 중국산이라 할지라도 일본제조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TAG을 제거할 경우 비정상물품처럼 보이므로 당사가 굳이 TAG을 제거할 이유가 없음

Q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을 과도한 원산지표시요구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현행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소비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원칙적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Tag 등 예외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사에서서는 일본 회사가 중국에 OEM주문하여 일본으로 수입한 제품을 일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였으나, 원산지표시는 플라스틱제 스트링으로 연결된 TAG상에 공산품품질표시와 함께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우산의 경우 제조 당시 천의 내부에 라벨로 견고하게 표시하거나 불멸 잉크로 인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좀 더 견고한 표시방법이 있음에도 견고성이 약한 태(Tag)으로 표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질 의

- 중국으로부터 면장갑을 수입하여 도매상 및 대형 철물점 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면장갑 수입시 10켤레 단위로 고무밴딩후 상표 및 원산지표시한 종지와 함께 비닐포장하여 2년간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 세관에서 원산지미표시로 시정요구를 받았음
- 200켤대들이 마대단위로 판매하고 소매상에서도 대부분 10켤레 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비닐포장 단위 표시를 허용하였는데 갑자기 현품에 표시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며 포장단위 표시를 요청함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물품의 특성상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현품에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면장갑에 스탬프를 날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현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면장갑(HS 6116)은 10개단위 포장으로 판매될 수도 있지만 철물점 및 소형슈퍼마켓 등에서 개별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품명,규격,원산지 및 수입자 등 주요사항을 인쇄한 비닐포장에 넣어 켈레단위로 견고하게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상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이 벌크상태의 장갑을 견고성이 약한 비닐에 넣고 비닐상에 표시하거나 또는 비닐포장안에 원산지를 표시한 종이를 넣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른 오인요소가 없는 한 원산지국가명인 "CHINA"만 날인하여도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 2007.7.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작업용 면장갑(HS 6116)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질 의

- ○ ○ 물산(주)가 우리세관에 수입신고한 베트남산 아동용 의류의 원산지표시 적정성에 관한 질의
- 본 건 상표(Pierre Cardin) 및 Paris(상표보다는 다소 작음)는 라벨, 태그, 기타 의류 여러부분에 표시되어 있으나 원산지표시인 “Made in Vietnam”은 의류 주머니 안쪽 직물제 라벨상에 홀림체로 표시되어 있어 오인표시 여부 질의

■ 회 신

- 원산지와 관계없는 “Paris”는 여러군데 표시하면서 원산지는 그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지 않고 또한 홀림체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오인표시에 해당함
- 불입 : 바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검토 1부.

바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검토

□ 질의물품 개요

- 수입자 : ○○물산
- 판매업체명 : (주)○○어패럴
- 수입물품 : 어린이용 바지
- 원산지 : 베트남
- 상표 : Pierre Cardin

□ 질의내역

- 상표 “Pierre Cardin” 아래등에 상표와 관계없이 원산지로인을 초래하는 상표권자 국적인 “Paris”가 5군데에 표시되어 있으며, “본 제품은 프랑스 Pierre Cardin의 Design 및 기술제공으로 (주)○○어패럴에서 기획한 제품입니다”로 표시되어 원산지로인을 초래하고 있으며,
- 원산지(베트남)표시는 공산품품질표시및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직물제 라벨 상에 작은 글씨의 이탤릭체로 “*Made in Vietnam*”과 같이 표시되어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
- 이때, 이러한 표시가 원산지로인 내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공정무역과-2653, '05.9.28 참조)

□ 검토내역

- 상표 외에 상표권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그 아래 또는 윗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현행 별표7) 제1호 및 제3호의 『오인사례』에 해당함
- 또한, 수입자(○○물산) 및 판매자(○○어패럴)는 정자체의 활자로 기재하였으나 원산지표시(Vietnam)는 흘림체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것은 상기 고시 별표10(현행 별표8)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글자크기 등 위반으로 『원산지부적정표시사례』에 해당함
 - 본 건 관세청 공정무역과-2653('05.9.28)호로 일선세관에 지시 및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자에게 안내한 바 있음
- 따라서, 본건은 원산지표시 『오인사례』에 해당함

<수입물품 상태>



■ 질 의

- 당사는 중국에 임가공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종전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라벨에 원산지표시가 안된 상태로 수입하여 왔으나,

Q 2004.3.1일자로 봉제국이 원산지로 됨에 따라 기 인쇄된 라벨 (제조원 : 우리회사)을 사용하고 그 위에 1×5Cm의 크기로 “Made in China” 표시 라벨을 별도 부착하고자 하는 바 인정되는 방식인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행위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전달 가능해야 하며
- 동 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제2항 따라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를 수입원이 아닌 제조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원과 같은 줄이나 바로 위 또는 아랫줄에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으나, 원산지만을 별도의 라벨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거하기 용이하고 부적정한 표시로 판단하고 있음

■ 질 의

- 당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모자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물제 라벨부분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예문1>	<예문2>	<예문3>
A6UC 본 제품은 (주)○○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거쳐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 불법 복제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섬유의 조성> 겉감 : 폴리에스테일 100% 안감 : 면 70%, 폴리 30% Size : 58cm 제조원 : (주)○○인터내셔널 Tel : (031)700-6771-3 Licensed by Korea Made in China	A6UC 본 제품은 (주)○○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거쳐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 불법 복제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섬유의 조성> 겉감 : 폴리에스테일 100% 안감 : 면 70%, 폴리 30% Size : 58cm 제조원 : (주)○○인터내셔널 Tel : (031)700-6771-3 Made in China Licensed by Korea	A6UC Licensed by Korea 본 제품은 (주)○○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거쳐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 불법 복제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섬유의 조성> 겉감 : 폴리에스테일 100% 안감 : 면 70%, 폴리 30% Size : 58cm 제조원 : (주)○○인터내셔널 Tel : (031)700-6771-3 Made in China

■ 회 신

- 문의한 원산지표시 라벨의 “제조원”을 수입업체명으로 표시한 부분과 “Licensed by Kore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임
- 다만, 원산지를 나타내는 “made in China”표시가 원산지로인표시(제조원 : (주)○○인터내셔널, “Licensed By Korea”)와 같은 줄이나 바로 아래줄 또는 윗줄 등 가까운 곳에 오인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 질 의

- 당사는 여성용 스타킹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중국 청도에 있는 현지법인에서 스타킹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함
- 스타킹은 한족당 판매가 가능하기에 먼저 한족씩 포장을 한 후 대량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12족씩 묶어 inner Box에 담고, 이를 다시 운반용인 out Box에 담아서 수입할 예정임

Q 이때, 어떤 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떤 형태로 표시해야 하는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견 여성용 스타킹은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1족 또는 1박스(12족) 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에 따라 판매단위인 1족의 포장단위와 박스단위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아울러, 제출된 질의물품의 사진을 살펴볼 때 족 및 박스 포장단위에 한글로 제품설명을 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Made in China” 또는 “제조국 :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그리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에 따라 포장재질이 비닐 및 종이인 점을 감안하여 인쇄(Printing)를 함이 원칙이나 상당한 힘을 가하여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부착되는 접착식 스티커(Sticker)에 의한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질 의

- 민원인은 국내에서 벨트 및 지갑류를 제조하는 영세업체임
- 세관단속이 소홀하여 할인점 뿐만 아니라 일부 유명브랜드에서도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지갑·벨트류를 국산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하여주기 바람
 - 벨트 : 버클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 악덕업자가 가위로 자른 후 유통시키므로 벨트가운데에 불박(화인)으로 표시 필요
 - 버클 : 뒷면에 철인 표시
 - 지갑 : 지갑 뒷면에 불박(화인)으로 원산지표시

■ 회 신

- 귀하가 건의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수입물품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표시가 요구되나, 그러한 제도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오히려 구매자가 소유한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우리청에서는 각 물품별로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
- 아울러 수입물품을 국산인양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업체를 발견한 경우 우리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질 의

- 대만에서 팬티형태로 편직된 원통형 편직물을 수입하여 국내 재단 및 봉제 제조 후 국내 내의류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Q 이때, 팬티형태의 직물 수입시 완제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 수입품의 HS는?

■ 회 신

- 수입물품과 완성물품 모두 HS 6107.12-1000에 분류(2004-11회 관세평가 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되는 동 질의물품은 부품형태로 편물된 물품을 봉제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3항 및 별표6-2(현행 별표9)의 규정에 따라 봉제공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 완제품생산후 국산표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생산품 원산지표시기준이 없어 판단이 곤란하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수출입과-1378, '04.12.18)이 있었음

■ 질 의

- 당사는 머플러, 의류, 신발 등 생활신변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으로부터 캐시미어 머플러 수입시 택과 스티커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라벨 박음질을 요구하고 있음
- 캐시미어는 산양털로 바느질에 약하여 천 자체가 울고 미어질 수가 있으므로 일본 및 중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걱정안 원산지표시는?

■ 회 신

- 본 건 머플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품질표시대상이나 동 표시가 없었으며, 종이위에 일본어로 표시한 TAG이 한군데만 머플러에 연결되었고 스티커 또한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5항에서는 인쇄, 박음질 등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는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중 백화점에 가서 확인결과 대부분의 캐시미어 머플러가 천으로 된 라벨 양옆을 9-10바늘씩 박음질 한 상태
- 본 건과 같이 라벨 및 박음질로도 제품의 손상없이 표시할 수 있음에도 견고하지 아니하고 오인우려가 있는 TAG이나 스티커로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 아니하며, 공산품품질표시를 한 라벨을 양쪽에서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판단

■ 질 의

- 당회사는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당사 신발 윗창(Tongue)에 원산지를 표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표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Q 신발(단화)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위치는 어디인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종적인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따라서, 제조 단계에서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위치에 인식하기 용이한 글자체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스티커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발의 경우 특별하게 지정된 위치는 없으나 신발바닥에 주조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발바닥, 신발 안쪽바닥, 신발안쪽 옆 등에 페인트로 인쇄하거나 라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화 등 신발의 경우 상관례상 신발윗창(Tongue)에도 박음질하여 규격을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Tongue 끝부분으로부터 1Cm이내에 표시된 경우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질의회신사례(ruling)가 있음
- 필요하시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샘플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표시사항의 적정여부를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음

■ 질 의

- 가구등 대형의 진열상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판매상품의 포장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 반지, 목걸이, 시계 등 소형 고가의 제품에 원산지표시시 상품가치 저하 문제가 있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 품질보증서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음
- 크기가 작은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소형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때 국명만 표시해도 되는지?

■ 회 신

- 가구 등 대형의 진열상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원산지표시를 하게 하는 목적은 원산지를 인식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이든 소형이든 진열상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6호)
 - 또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도 부당한 광고/표시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반지, 목걸이, 시계 등 소형 고가의 제품에 원산지표시시 상품가치 저하 문제가 있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고가품이라 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되지 않으며(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 소비자는 매장에서 현품 및 포장상의 원산지를 보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품질보증서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당해 국가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후 자택 등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표시의 취지에 맞지 않음
- 크기가 작은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소형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때 국명만 표시해도 되는지?
 - 시계의 경우에는 특별히 작아 표시할 공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에 "Made in France"등으로 각인 또는 스크린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반지 목걸이 등 표시할 공간이 없는 소형의 물품에는 스티커나 꼬리표(tag)를 이용하여 원산지표시가 가능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 질 의

- 폐사에서는 호주 ○○사의 골프캐디백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상표 “○○○ Australia”는 가방밖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별도의 천라벨(크기 5×30mm)로 가방안쪽에 표시하였음

Q 세관에서 원산지 오인우려가 있다고 상표(○○○ Australia) 바로 아래 “Made in CHINA” 표시를 하도록 시정통보 하였는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연행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지?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하고,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박음질 등 견고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로인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제6-2-4조(현행 제77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
- 그러나 귀사가 수입한 ○○○골프백에는 원산지로인을 초래할 수 있는 “Australia”는 전면에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 원산지표시는 제거하기 용이한 별도의 소형라벨로 가방안쪽에 깊숙이 표시하여 적정한 표시라고 볼 수 없음

질 의

- 국내 제조업체에서 옷걸이를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 후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걸어 포장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Q 재수입조건으로 수출하는 옷걸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옷걸이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재수입할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가 면제됨

■ 질 의

- 당사는 참치선물세트포장용 가방과 의류포장용 카바를 만드는 회사로서, 제품제조에 필요한 원단·지퍼등 원부자재를 중국하청공장에 보내어 봉제 가공 후 다시 들여오고 있음

Q 동 포장용 가방은 참치선물세트 판매업체에 납품하여 주로 선물용세트의 포장용으로 사용되고, 옷카바 또한 의류판매업체에 포장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몇백원대)하고 통상 1회사용후 폐기하는 물품인바 연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 회 신

-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제질의 용기는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현행 제80조)제2항 참조),
- 기성신사복 등 재사용 가능한 옷커버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서 상거래 관행상 신사복이 옷커버에 포장된 상태로 거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시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구나 옷커버의 원산지표시가 기성복의 원산지를 혼동시킬 우려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옷카버에 의류회사명 등이 인쇄된 경우는 1회사용용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사용가능한 옷커버는 현품에 "Suit cover made in China" 또는 "커버원산지 : 중국"과 같이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물품 전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중국에서 볼펜세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Q 볼펜과 샤프를 한 세트로 넣어 수입할 때 각각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케이스에만 표시해도 되는지?

■ 회 신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는 각각의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 귀하가 수입하는 볼펜세트의 경우 케이스는 물품을 꺼내볼 수 있는 비닐포장이므로, 현품표시의 예외가 적용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원산지표시제도가 1991.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되는 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허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1. 사유

- 직물은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고 의류등의 제조업자가 롤상태로 포장된 물품을 원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 직물양옆에 1m간격으로 박음질표시는 제조원가를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국제관행에도 어긋남

2. 표시방법 건의

- 표시위치 : 각절의 끝, 포장물 포장용기 중 1개소
- 표시방법 : 접착식스티커 또는 태크(TAG)에 의한 표시

■ 회 신

- 직물원단은 직물 양변이나 직물의 끝부분 또는 직물말대에 제직, 날염, 금은박, 프린트나 기타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직물류 표시방법을 각 세관에 시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질 의

- 단위농협에서 지역 특산물인 천일염을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중국산 소금 포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포장에 인쇄된 “bag made in china”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금의 경우에도 중국산으로 오해하고 있어
- 포대 수입시 현품 대신에 최소포장상에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회 신

- 해당 소금포대는 자체 재질, 내구성, 재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예 : “Bag made in 국명”)

■ 질 의

- 작업용 장갑을 수입하여 고무코팅을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여부

■ 회 신

-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실수요자가 직접수입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대행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3호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 질의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합성섬유제 작업용 장갑으로서 완성품의 형태를 갖춘 것이고,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고무코팅 작업을 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질의물품은 현품 또는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명백히 한 켤레로 구성된 신발에 한쪽 한쪽 모두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HS 64류에 분류되는 신발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발 한쪽 한쪽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 의

가. 안경테의 어느 부분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1) 품질경영촉진법(이하 “품경법”이라 한다)에 의한 품질표시 라벨이나 꼬리표 부분에 원산지를 ‘일본·이태리·홍콩’이라고 표시한 경우
- 2) 동 라벨 등에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그 중 1개국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한 경우

나.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영문 ‘made in hongkong’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 1) 품경법에 의한 상기 라벨 등에 원산지를 ‘일본·이태리·홍콩’이라고 표시한 경우
- 2) 동 라벨 등에 2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그 중 1개국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한 경우

다.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made in hongkong’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 1) 품경법에 의한 품질표시에 ‘원산지’란의 기재 없이 판매업체명, 제조업체명을 기재한 경우
- 2) 품경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made in hongkong’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부분에 ‘Italian Mode, Brand by Japan, Germany Technology’ 등과 같은 원산지와 관계없는 표시를 한 경우

마.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made in hongkong’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글씨체가 활자체가 아닌 그래픽체, 흘림체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

가. 상기 가의 경우 안경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

나.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7항에 의거 품경법 등에 의한 품질표시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제품이 생산된 특정 제조국을 의미하므로 원산지를 2개 이상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정

2) 현품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고 품경법에 의한 품질표시에도 비록 2개국 이상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중 특정국을 검정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 한 만큼 부적정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움

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7항에 의거 품경법 등에 의한 품질표시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체명이나 판매업체명은 원산지가 아닌 제조회사, 판매회사의 표기이므로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님 (다만, “Made by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 등으로 상세하게 표시된 경우는 원산지로 인정)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7항에 의거 품경법 등에 의한 품질표시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동 규정 위반이며, 품경법 제22조에서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제조국)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품경법에서 확인 바람

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현행 제35조) 별표 9(현행 별표7)에 의거 상기와 같이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라의 질의 내용과 같은 표기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

마. 동 건 역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현행 제35조) 별표 9 (현행 별표7)에 의거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

■ 질 의

- “Made in Australia and distributed usder license for ○○ AG Germany by :”
상기문구는 “○○본사인 ○○ AG Germany의 라이선스 하에 호주에서
생산되어 공급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산업자원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의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에 따라 “Made in Australia”가 정확하게
표시됨

Q 원산지표시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에 의거 사전확인 신청하신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당해물품인 현품에 「Made in Australia」로 하여야 함
- 또한, 동 물품의 케이스 뒷부분에 표기된 「Made in Australia and
distributed under license for Wella AG Germany by : 」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현행제35조) <별표 9>(현행 별표7) 2호 즉,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
보기 어렵게 한 경우로서 오인표시 사례에 해당되므로,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Australia」를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중국으로부터 도자기를 수입하는 회사로 해외 유명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영국사의 경우 로고밑에 “London”이 표기되어 있고, 이태리사의 경우 로고밑에 “Rome” 또는 “Italy”가 표시되어 있음. 수입시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를 반드시 표시

Q 이러한 지명이 표기되어 있는 라이선스 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및 표기방법이 부적합 할 경우 적정 표시방법

■ 회 신

- 질의 내용 중 수입 도자기의 브랜드 및 라이선서가 영국사인 경우 로고밑에 London, 이태리사인 경우 Rome 또는 Italy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자칫 영국제 또는 이탈리아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실제 도자기의 제조국 즉,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로고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않음

■ 질 의

- 수입물품 : HS 9503.70, 나무제 블럭 완구
- 거래처(○○사)는 완구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로 유럽에서 비치원목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블럭형태로 자르고 가공하여 세트상태로 국내에 수입한 후, 구멍을 뚫어 자석을 끼워넣어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차후 국내판매계획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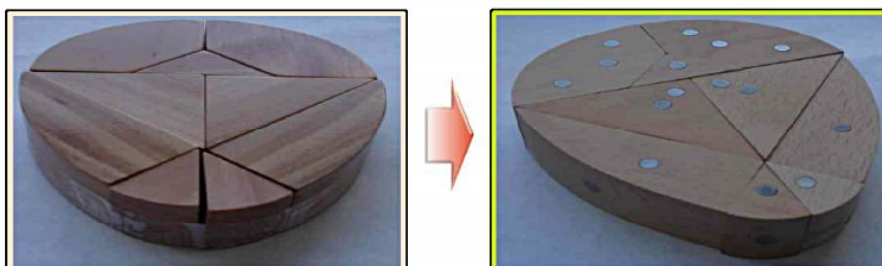
Q 수입 후 가공을 하며, 물품에 인쇄하는 경우 상품가치가 훼손되므로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하는 것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본 수입물품은 수입된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물품이고 국내에서 자석을 끼운 후에도 HS가 변경되지 않아 국내가공은 단순가공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변형을 초래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아울러 현품상에도 라미네이팅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세트수입시에는 세트별로 1개이상 부착)
- 아울러, 국내가공 후에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국내 판매시에는 최초 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현행 별표3) 제2호



■ 질 의

- 수입물품 : HS 4418.90, 목재계단
- 목재계단의 부품을 베트남, 중국에서 제작하여 수입한 후 국내현장에서 절단 또는 그 자체로 조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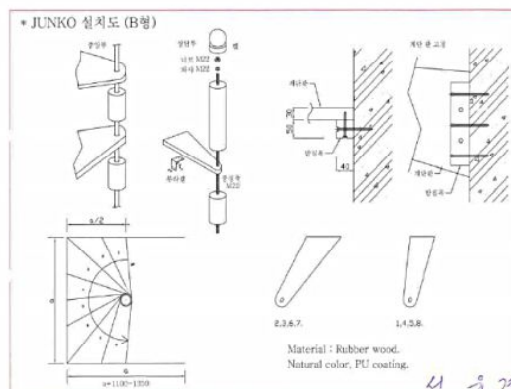
Q 수입시 종류별로 포장하여 수입하기 때문에 개별제품에 표시가 어려우므로 포장상 표시 가능 여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품상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크게 훼손되는 경우는 포장상 표시할 수 있으나, 본 물품중 판자(계단)은 홈 안쪽에, 중앙 지지대는 접측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물품이 훼손되지 않음

■ 관련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제1항



■ 질 의

- 수입물품 : HS 3305.90, 머리영양제
- 프랑스의 제약회사겸화장품사인 파브르더몬코스메틱사가 제조하는 머리영양제 및 화장품 등 수입물품은 외부포장상에 'Made in France'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앰플이나 병에는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음.

Q 디자인 변경시에는 제조사에 시간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당분간 박스상에 원산지표시를 허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품상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최소 포장상 표시할 수 있고, 본 화장품은 앰플상에 표시할 공간이 충분함.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 봉인된 박스상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박스상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나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제1항



질 의

- 수입물품 : HS 3926.90, 5ml Polystyrene Round Bottom Tube
-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Tube로서 실험샘플보관, 희석, 원심분리 및 배양하기 위한 용도의 1회용품으로서 멸균되어 있고, 멸균된 포장을 뜯으면 나머지 포장을 폐기해야 하므로 1개, 25개, 125개 단위로 비닐포장되어 있으며, 멸균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500개단위의 벌크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박스단위로 판매됨

Q 개별제품이 아닌 박스단위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25개 팩으로 포장된 물품은 그 상태로 판매될 것이 인정되고, 500개 단위 벌크 포장된 박스는 소매판매 단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제조단계에서 금형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개당 10~20원)에 비해 원산지표시 비용이 과도하고 박스를 놓아두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박스단위 표시를 허용할 수 있음
- 다만, 과학기구점에 문의한 결과 낱개단위 판매도 1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비닐포장상에 LOT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닐에 인쇄 가능하므로 낱개포장 물품은 비닐에 표시함이 타당



■ 질 의

- 수입물품 : HS 9506, 등산용 아이젠
- 한국에서 아이젠의 모든 부품이 수출되어 중국에서 단순조립 후 재수입될 예정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어려운바 각 제품을 폴리백에 일정량 포장후 다시 Box패킹하여 수입할 예정

Q 이때 Poly Bag과 Box상에만 원산지표시시 걱정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종적인 HS 6단위 변경국을 원산지로 하나, 관세율표해석통칙 제2호가목(미완성 완제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아이젠의 부품으로 절단된 철사(73류), 바닥접촉부(73류) 및 고무커버(40류)를 중국에서 조립한 경우 중국이 원산지가 됨.
- 또한, 당 물품은 고무에 SNOW LINE 및 FORNT라는 각인이 되어 있어 원산지 각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고무 부분에 인쇄하거나 바닥과 닿는 쇠부분에 인쇄·각인할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수입물품 : HS 9503.70 소꿉놀이세트 [쿡웨어 법랑세트(26pcs), 쿡웨어 스테인레스세트(12pcs), 핸드페인팅 액자와 보석함(5pcs)]
- 시중의 할인마트 및 완구매장에서 흔히 판매되는 어린이용 소꿉놀이기구로 원칙적으로 개별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지만 상거래관행상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이고, 투명하게 포장되어 원산지오인우려가 없음

Q 박스상에 공산품품질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박스상에 표시 가능 여부

■ 회 신

-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동 물품은 박스에 넣어져 있지만 봉인되어 판매되는 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개별 판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고, 제6-2-6조(현행 제79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과 포장상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회신됨
(산업자원부 수출입과-382호, 2006.10.25)



■ 질 의

○ 수입물품 : HS 7323.93, 스테인레스스틸 성배잔
(상부직경 31mm, 하부직경 16~22mm, 높이 30~33mm)

○ 성당에서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작은 잔(cup)임

Q 일반소비자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지? 표시하여야 한다면 작업위치와 방법

■ 회 신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물품은 밑면에 원산지표시를 각인하거나 손으로 지워지지 않는 불멸 잉크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하부 직경이 20mm이하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



■ 질 의

- 수입물품 : 1) 크리스마스트리용 볼(직물제)
2) 크리스마스트리용 화이트 볼(프라스틱제)
- 1) 현재와 같이 직물라벨을 붙이는 것은 상품성 훼손이 매우 크기 때문에 3개들이 PVC포장상에 공산품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개별물품에 하여야 한다면 스티커로 표시하고자 함
- 2) 화이트볼은 현품에 인쇄나 스티커 부착시 상품성을 훼손하므로 비닐포장상에 공산품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함

Q 걱정안 원산지표시 걱정 여부

■ 회 신

- 1) 붉은색 볼은 직물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라벨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며, 3개들이 PVC포상에 표시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는 경우 제거하기 용이하여 부적정함
- 2) 화이트볼은 상단 또는 하단에 원산지를 인쇄하더라도 상품성 훼손이 큰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포장비닐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11 제3호의 미표시사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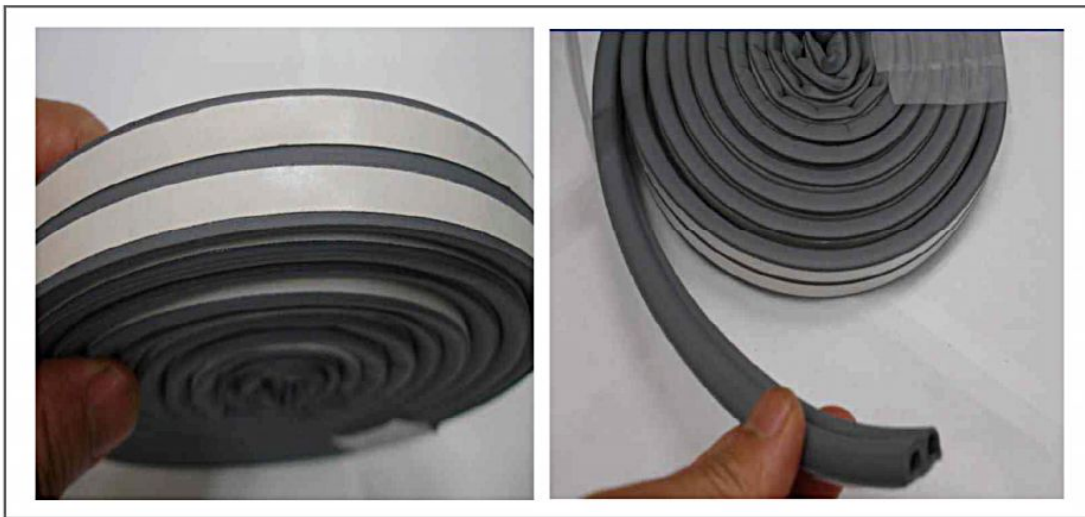
■ 질 의

- 수입물품 : HS 4016.99, 고무제 문풍지
- 고무제로 된 문풍지용의 제품으로, 롤 상태로 수입코자 함

Q 포장하기 전 단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품에 큰 도장을 찍던가 라벨을 붙여 수입 가능 여부

■ 회 신

- 본제품은 2~3M 단위로 잘라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따라서, 최소판매 단위인 2m마다 문풍지의 접착성분을 보호하기 위한(떼어 낼 수 있는) 흰색 종이부분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질 의

- 수입물품 : HS 6911.10, 도자제 주방용품(커피잔 세트)
- 캔포장에 커피잔세트를 넣은 후 비닐로 밀폐 포장하여 판매되는 제품

Q 비닐포장위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스티커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부착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표시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부위에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박스를 포장한 비닐에는 바코드와 같은 크기의 식품위생법상 표시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그 크기는 5포인트 정도이나, 내부의 현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 밑면에는 "ELO GERMANY FINECASA 4D705"라고 인쇄되어 독일산이라는 오인을 초래함 (원산지고시 별표 5 해당)
- 따라서,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 밑면에 원산지표시를 인쇄하여야 하고, 식품 위생법상 표시는 10포인트이상 크기로 포장 옆면에 표시 요망



■ 질 의

- 원산지표시 : 여러 벌이 들어있는 포장박스에만 표시
- 본 물품은 시중 유통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구역에서만 사용하는 1회용품임
- 또한, 폐기용량 축소를 위해 90℃에서 용해되므로 현품에 스티커나 인쇄를 할 경우 불순물 증가로 이온교환처리에 차질이 우려됨

Q 걱정안 원산지표시방법인지 여부

■ 회 신

- [적 정]
- 본 물품은 원자력발전소에서만 사용할 것으로 인정됨
- 또한, 오염가능성이 있어 박스단위 아닌 낱개로는 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박스단위 원산지표시를 허용함



■ 질 의

☞ 우리세관에서 조사중인 HS 8539.22-1000호에 분류되는 백열램프의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3항 및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제5호,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품 상태

- 개별 포장에는 “제조회사 : Hangzhou Yida Lighting Electric co., Ltd, 판매원 : ○○조명(주)”로 표기되어 있고, 물품에는 유리구 상부에 ‘○○전구’로 표기하면서 램프 하부 금속제 Base에 ‘CHINA’로 각인된 상태임

○ 원산지 관련 규정

- 원산지표시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제1항제3호는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제4호는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으로 규정
- 전구는 상거래 관행상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의 일종임 (관세청 공정무역과-89, '05.1.11.시행)



Q 본건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동조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이 포장에 표기되어 있고, 동조 제4호의 “국명”이 물품상에 표기되어 있어 당해물품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부합하는 물품이라고 알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세관의 질의사항은 전구 현품(BASE)에 'CHINA'를 각인하였으나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포장박스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의한 표시』를 하면서 중국의 제조회사명(Hangzhou Yida Lighting Electric)과 국내 판매업체(두영조명)만 기재하고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오인표시인지 또는 부적정표시인지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3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을 하는 경우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동 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7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건은 현품에는 원산지가 기재되었으나 소매포장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제조원으로 'Hangzhou'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산지제도 운영에관한고시 별표6 제2호의 '부적정표시사례'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238조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 대상임

■ 질 의

- 중국에서 어린이 운동기구인 ○○○ 수입 예정으로, ○○○은 탄력있는 직물을 이용 자유롭게 떨어 수 있고 철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 기구이며, 안전펜스는 국내에서 만들어 세트와 같이 판매하고자 함

Q ○○○국에서 수입되는 ○○○의 탄력직물(트램폴린) 밑면에 원산지를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수입되는 물품의 박스에는 판매원, 제조국명(수입물품과 국산 예시), 규격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신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원산지를 알고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바닥망(트램폴린) 아랫부분에 원산지표시를 한다면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미표시로 판단되며, 트램폴린 테두리 옆부분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다면 다리부분(윗쪽)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철봉은 아랫부분 트램폴린과 만나는 부근 근처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산지표시는 각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불멸잉크로도 표시 가능
- 아래와 같이 공산품품질표시와 함께 표시하여 스티커를 작성한 후 견고하게 ○○○ 다리 및 철봉 아랫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접착성이 적어 제거가 용이한 경우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품 명 : 어린이용 운동기구 ○○○ 규 격 : 트램폴린 지름 90cm * 높이 23cm, 철봉높이 1,980(최소 1,230) 직경 5cm 원산지 : ○○○국 판매원 : ○○○○(주) 전 화 : 주 소 :
--

■ 질 의

- 한국 ○○브랜드골프(주)가 수입하는 골프클럽에는 Shaft 중앙부분에 “Made in China”라고 실크인쇄로 선명히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립 바로 아래에는 미국에서 조립(Assembly)된 골프클럽이 일본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표시(“日本仕様”, “Made for Japan”)의 스티커가 부착
- ○○세관에서 수입통관 과정에서 이러한 표시가 부적정하다고 시정을 요구 받았는 바, 위 골프클럽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재수출된 물품으로 이 스티커는 원산지표시가 아니며, 더구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Shaft 중앙에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

Q 원산지 오인우려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스티커를 제거 걱정 여부

■ 회 신

- 골프채 등 단순결합물품이 아니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Made in 국가명’ 방식의 표시만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Made in China (Material from Korea)는 허용 가능
- 골프클럽을 확인한 결과 샤프트 하단에는 중국산 Head와 일본산 Shaft를 미국에서 조립하였다고 표시(영어)된 투명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샤프트 상단에는 “일본사양(日本仕様)” 및 “Made for Japan”이라고 표시된 알미늄 포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샤프트 중앙에는 헤드와 그립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판단하여 흰색페인트로 “Made in China”를 표시하고 있음
- 원산지는 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비록 다른 곳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일본사양” 및 “Made for Japan”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5 제1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 사례
- 동 고시 제5-2조(현행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의 윗줄 또는 아랫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옆부분에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 이상의 크기로 명확성 및 견고성을 갖도록 표시하여야 함

* 참고 : 일본에서 제조하였다고 표시된 대부분의 Shaft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Shaft 형태로 제조(원료 : 카본+석면)된 후, 일본에서 상표 인쇄만 진행(원산지 불인정 공정)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음

■ 질 의

- 태국에서 수입한 목각 재털이 등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붙였는데 인천공항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됨

Q 종전에는 스티커표시도 인정되었는데 불멸링크만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 질의하신 목기제품에 대해서는 화인(火印)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불멸링크로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스티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명, 규격, 원산지, 수입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공산품품질표시를 견고하게 부착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는 시중 유통단계에서 제거하기 용이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질 의

- 중국으로부터 목제 주방용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당시 관세사에 문의한 결과 “Made in China” 방식으로 표시하라 하여 불도장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사실이 있고, 근래 중국 모 공장에 가보니 불멸잉크로 “CHINA”라고만 표시 제작되고 있어 질의하였더니 몇 년 전부터 현재와 같이 제작하여 한국 ○○업체로 수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 바 있음

Q 그렇다면 불공평한 것 아닌지 여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시공간이 좁거나 당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에 “원산지 : 국가명” 또는 “Made in 국가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
- 아울러, 제시한 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회한 결과 불임과 같이 “Made In China”를 주방용목기 밑바닥에 불멸잉크로 인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시내용

▶ 공정무역과-1199, 2006.4.3 목기류 원산지표시방법 안내

- 최근 중국에서 주방용 목기를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자신은 불박(화인)으로 “Made in China”를 하여 수입하고 있으나, 다른 업체는 불멸잉크로 “China”만 표시하여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 진정서가 접수됨
- 원산지표시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상품훼손 우려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현품에 “원산지 : 국명” 또는 “Made in 국명”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주방용 목기의 경우는 바닥부분에 가능한 한 불박(화인)으로 “Made In China”등으로 표시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멸잉크로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



■ 질 의

- 중국으로부터 드럼스틱을 OEM생산 수입하여 옥션에서 판매하거나 악기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 거래하는 관세사는 각각의 스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옥션에서 보면 다른 판매자들은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기재했지만 구석에 작게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임

Q 따라서, 제가 수입한 스틱은 경쟁업체에 비해 매출이 저조한 바 드럼 스틱 날개마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만약 개개마다 표시해야 한다면 다른 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관했는지 궁금함

■ 회 신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드럼용 스틱의 경우 스틱상에 상표 및 규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상품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품 훼손을 방지하고자 현품상 아무런 표시없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박스에 벌크상태로 담긴 경우는 개개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으로 판단됨



■ 질 의

- 당사는 BEKA라는 독일브랜드의 냄비를 수입하고 있고, 당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독일 기술지도를 통해 중국에서 주방용품 대량생산을 하고 있으며, 냄비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로서 제품상에 상표권자인 GERMANY가 양각되어 있어 원산지오인을 초래한다고 세관에서는 같은 바닥면에 불멸잉크 스탬핑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Q 그러나, 잉크로 원산지표시 인쇄시 지워지는 문제점이 있고 제조사에서는 “GERMANY” 표시를 삭제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연품상 원산지 표시가 곤란하므로 식품위생법상 표시를 안 스티커상에 “Made in China” 표시한 후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지

■ 회 신

- 귀사가 수입하는 주방용품상 양각된 상표권자 국가인 “GERMANY”는 원산지와 관계없고 오인표시에 해당하므로 원산지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오인표시와 가까운 곳에 “MADE IN CHINA”를 인쇄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표시를 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표시가 가능하나 오인표시와 같은 바닥판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질 의

- (주)○○○이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여 2004.10.26 이탈리아로 수출한 주사기가 품질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반송되어 2005.12.23 재수입신고
- 이 물품을 검사한 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명칭이나 원산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12개들이 주사기 포장 하단에 업체명과 “ITALY”가 기재되어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조사의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으로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자(상표권자)인 “ITALY”를 표시한 것이 원산지 허위표시인지 여부

■ 회 신

- ARTSANA, GRANDATE (Como) Italy는 이탈리아의 Grandate지역에 있는 ARTSANA라는 회사를 의미하고,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만을 금지하고 있음
- (주)○○○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상기 표시를 한 후 OEM으로 수출하였으며,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나 오인표시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동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2조(현행 제3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오인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한 후 통관을 허용하여야 함
- 다만, 동 물품은 수출물품으로서 하자가 있어 재수입하는 경우이며 우리나라에서 수리하여 재수출할 예정이라 하므로, 적정하게 표시하여 재수출한 후 수입지세관장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부관을 붙여 통관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일본으로부터 주방용품 및 욕실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최근 일본의 업체가 중국에 OEM방식으로 생산한 목욕타월을 수입하였는 바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견고하게 비닐포장(상표등 유의사항도 인쇄되어 있음)한 후 그 하단부에 명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음
- 그러나, 세관에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차후 시정을 요구하였는 바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도 이와같이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당 회사의 수입물품이 포장도 더 견고한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수출자는 원산지표시가 잘되어 있다고 하며 반품도 거절하는바 시정조치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회 신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것을 요구
- 다만, 당해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표시비용이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또는 상거래관행상 포장/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로인을 초래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최소 포장/용기상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
- 귀사에서 수입한 목욕용 장갑의 경우 현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켈레단위 비닐포장(견고성은 다소 부족) 뒷면 하단에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당해 물품이 저가의 물품이어서 시중유통과정에서 포장을 제거할 가능성이 적으며, 현품에는 상표 등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어떤 표시도 없어 적절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포장 전면과 후면에 일본어로 전부 설명되어 있어 소비자가 일본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포장의 전면에도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의 공산품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질 의

- (주)○○○에서 수입신고한 스텐레스스틸 재질의 진공보온병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현품에는 적정하지 아니한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되었고, 포장에는 별첨과 같이 일본상표를 도입하여 국내 제조한 것처럼 일본상표와 한글로만 표시되어 원산지로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포장케이스에 “MADE IN CHINA” 영문표기를 하도록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였음
- 그러나, 수입화주는 현품에 스티커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며 포장에도 작지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박스상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함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적정여부를 질의

(제 1안) : 현 상태 인정처리

(제 2안) : 현품은 그대로 두고 최소포장에만 표시 시정요구

(제 3안) : 현품과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우리세관 의견 : 제3안

■ 회 신

- 본 건 검토한 결과 현품의 스티커는 견고성이 있고 다른 오인요소가 없어 인정 가능하므로 귀 세관 제2안(현품의 원산지표시는 그대로 두고 최소판매 포장상에 특수잉크로 인쇄)이 적정함



■ 질 의

- 당사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펄프(종이)로 만든 계란 받침판(난좌)을 수입하여 100-120개 단위 포장으로 국내 양계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난좌는 포장/진열용기로서 울통불통하여 개별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어려움

Q 따라서, 100-120개 단위로 랩/박스포장을 하고 그 위에 스티커나 스탬프로 표시하고자 하는 바 적쟁안지 여부

■ 회 신

- 계란 받침판은 반복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이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현행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소판매단위(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질 의

- 원산지규정은 국내산업 및 소비자보호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판매할 십자가목걸이가 원산지표시가 없어 보수작업명령을 받았음

Q 종교용품이라 애도 범을 피해갈 수는 없으나 이탈리아에서 만든 십자가에 원산지표시의 의미가 있는지

■ 회 신

-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될 대부분의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이며 HS 8306.29에 해당하는 비금속제 목걸이도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에서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기관에서 개인에게 판매할 목걸이라 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되지는 않음
- 또한, 종교신자도 소비자로서 목걸이 구입시 원산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수입하였더라도 개인에게 판매 또는 배포할 목걸이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질 의

- 통신판매회사로서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1) 물품은 장식용 조화로서 꽃 뒷부분이 코르크와 같은 재질로 스탬핑하기 어려워 스티커로 표시하고자 하며,
- 2) 물품은 식물재료형태의 화환(Wreath)으로서 다른 표시방법이 마땅치 않아 꼬리표(TAG)로 표시하고자 함

Q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인지 여부

■ 회 신

- 장식용조화에 대해서는 코르크면에 페인트 등으로도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만약 인쇄면이 울퉁불퉁해서 표시가 불가능하다면 잘 떨어질 수 있는 스티커보다는 견고한 꼬리표(TAG)방식이 적정함
- 식물재료 화환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된 스티커를 식물재료에 감아 양면을 접착하는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하며, 부득이하다면 꼬리표(TAG)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함



■ 질 의

- 세면대, 양변기 등 화장실용 도자제품을 설계,제조 및 설치하는 회사로서 중국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세면대,양변기를 수입판매할 예정임

Q 변기, 세면기의 옆면 또는 뒷면에 페인트로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하여 수입할 경우 인정되는 지 여부

■ 회 신

- 변기, 세면기의 옆면 또는 뒷면은 소비자가 구매시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페인트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글씨가 크고 선명하며 견고한 방식이면 인정 가능



■ 질 의

- 중국에서 우산 및 양산을 OEM으로 생산하여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물품 통관당시 세관 및 담당자별 적정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통관에 애로가 있음

Q 우산 및 양산 수입시 붙임과 같이 천으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작하여 우산 천에 봉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바 이 표시가 타당한지 여부

■ 회 신

- 우산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된 표시방법은 없으나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방법과 같이 원산지표시라벨을 제작하여 우산(천)에 라벨 양끝을 박음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제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소비자가 수입자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라벨 제작시 수입자명과 전화번호를 병기하는 것이 타당함

■ 질 의

- 당회사는 플라스틱제 그릇을 생산 수출 및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신제품의 경우 판매예측을 위해 우선 소량을 반제품 또는 완제품상태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경우 대부분 금형에 원산지표시를 새겨 각인하고, 금형을 만들 수 없거나 이미 생산된 제품의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는 스티커를 개별제품에 부착하여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Q 그러나, 이미 제품포장이 완료된 경우 애체 작업 및 재포장의 어려움이 있어 포장재(비닐백 등)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원산지를 인쇄하려고 하는 바 허용되는 표시인지요?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각인 등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식품위생법 등 특별법에서 규정한 품질, 규격, 재질, 판매자, 수입자 등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스티커에 의한 표시 방법도 가능하나, 이 경우 스티커는 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
- 그러나, 단순히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포장위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규정상 적정한 방법이 아님

■ 질 의

- 당사는 레포츠 개발회사로서 ○○시 ○○공원에 사계절스키장을 건설·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공원에 사계절스키장이 계약을 체결 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어 공사일정상 빨리 결정되어야 하는 바
- 인공스키장 건설용 바닥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은 아니지만 당사에서 건설하는 스키장에 직접 시공재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원산지로 인해 오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음



표시면제나 최소포장상 표시암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부는?

■ 회 신

- 질의내용과 같이 귀사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인공스키장 설치에 사용될 자재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음

■ 질 의

- 직물제 머리띠를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상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종이카드보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홈을 판 후 머리띠를 감은 다음 플라스틱 스트링으로 고정시켰음
- 카드보드와 머리띠를 연결한 스트링을 절단하여 분리시에는 유명상표인 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우는 없음

Q 이러한 경우 연품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카드보드에 표시된 원산지표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 회 신

-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현품이 카드보드(Card Board)에 고정된 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카드보드(Card Board)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

■ 질 의

- 당사는 국내에서 자동차카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경쟁업체가 일본에서 완제품 방식과 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직물과 스폰지 등을 재단한 후 덧붙여 자동차카바를 만들고 있음
- 그런데, 비닐로 된 포장상에 “국내제조”임을 스티커로 표시하였으나 제조 방식의 원산지 “일본제” 및 수입당시 표시된 상표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매점에서는 비닐을 제거한 후 일본산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Q 이러한 것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방법과 상표법 위반이 아닌지

■ 회 신

- 대외무역법은 수입품과 수입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대외 무역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니나 “일본산”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 병행수입으로 수입한 방식에 붙어있는 상표를 제거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동차카바를 만든 경우, 자동차카바에 제조자 자신이 사용권이 있는 상표를 부착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보인다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방식에 붙어있는 일본 상표가 더 크게 보여 상표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제품을 사용하였더라도 상표법 제66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전화 042- 481-5183-6)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국내제조한 물품의 상표법 및 표시광고의공정화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은 가까운 경찰서(수사2과), 특허청(상표법위반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원산지 허위표시 경우)에 하시기 바람

■ 질 의

- 당사는 벨트등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한국으로 선적시 가죽제 허리 벨트에 원산지표시를 스티카 또는 꼬리표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 택이나 스티카 등이 가능하지 않다면 섬유로 된 벨트는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 회 신

- 가죽벨트는 원칙적으로 압인, 불박, 금박 또는 페인트 등으로 벨트 중간 또는 끝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티카 혹은 꼬리표에 의한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구입하기 전에 유통과정에서 제거될 우려가 높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섬유제 벨트의 경우 나이론 등 압인이 가능한 경우는 불박(화인)으로 면 등 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페인트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날인(스탬프 또는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그러한 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듬성듬성 짜여진 벨트라면 스트링 택(String Tag)에 수입판매원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질 의

- 중국에서 삼파장전구를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는 업체로 대외무역법상 “상거래관행상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에만 표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전구는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물품이므로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이 가능
한지

■ 회 신

- 포장(용기)상태로 보아 질의물품은 상거래관행상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제5호)
- 다만, 질의물품에는 포장용기 6개면 중 밑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제조원, 판매원, 한국내 주소, 품명, 전구의 특성,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한글로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원산지표시는 밑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Made in China와 같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임(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제1항제2호)
- 원칙적으로 원산지 오인표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로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최종구매자가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대외무역법 제23조3항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제2항)
- 따라서, 질의물품과 같이 포장(용기)의 5개면에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으나 모든 면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확인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품질표시 항목(제품명, 형식, 제조원, 판매원, 규격 등)의 “제조원” 표시부분과 주소표시 근접한 곳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표시방법임

■ 질 의

- 치과용임플란트를 생산하는 미국 L○○사의 한국대리점임
- 보통 한달에 3회, 매회 1000-2000여개를 수입하는데 이때 “made in USA” 라벨을 붙이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의료기기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거 통관 후 한글표시라벨을 붙이므로 소비자가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포장이 아닌 대박스 또는 중박스상 원산지표시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 미국제조원과 특허권자인 이태리사가 병기되어 있는바 이를 주소로 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따라서, 치과용임플란트는 수입당시에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 약사법상 원산지표시도 인정가능하며, 제조국가와 특허권자국가를 단순히 나열 표시하면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MANUFACTURED BY 제조회사명, 주소, 국가” 및 “AUTHORIZED BY 특허권자명, 국명”으로 각각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함

■ 질 의

- 모 업체가 독일에서 어린이용 목각용품을 수입하였는데 큰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일부는 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음

Q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물품에는 꼬리표(Tag)로 원산지표시를 하였는데
정당한 방법인지

■ 회 신

-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거래질서확립과 허위·오인표시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대외무역법 제23조(현행 제33조)) 원칙적으로 현품에 식각·인쇄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 다만, 현품에 표시할 공간이 좁거나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꼬리표(Tag),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봉인포장 판매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아울러, 수입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포장판매업자가 재포장용기에 원산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1항)

■ 질 의

- 볼펜 등의 필기구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폐사 미국 공장을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으로 이전함에 따라 볼펜의 디자인을 다시하여 뒷부분 마개상단에 S.Africa로 원산지표시하고자 함

Q 볼펜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국가에도 이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바 한국의 원산지표시규정에 저촉됨이 없는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가 파악하기 용이한 곳에 견고하게 표시하되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
- 볼펜의 경우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원산지국명만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South Africa”를 “S. Africa”로 표시하여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바탕색과 구분되게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실리카겔을 수입하여 제조업체에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로 본 물품은 습기/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기계 등의 포장박스에 들어지는 물품으로 제약회사/식료품회사 등에 박스(2000-5000개 적입) 단위로 납품(판매)할 예정입니다

Q 수입물품의 크기도 작거니와 실제 수출물품의 신용을 고려 최소포장에 원산지표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 회 신

- 본 물품은 날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의약품등 제조업자에게 박스 단위로 판매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판매단위의 포장박스에 원산지표시가 가능(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 질 의

- 당사는 양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최근 캐나다 바이어가 지정한 홍콩 포장재 제조업체로 부터 중국산 박스를 사용하여 수출하도록 요구 받았음

Q 이때 양말을 포장하여 수출할 박스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수출용 양말을 포장할 박스(Gift Box)의 경우에는 1회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이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외화획득용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현행 제80조)제2항 및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품상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함

■ 질 의

- 일본업체가 중국에 하청을 주어 생산 일본으로 수입한 캡슐토이와 꼬마인형(가샤폰)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임
- 동 장난감은 너무 작아 현품상 B.CHINA 또는 M.CHINA 등으로 음각되어 있고, 카다로그에 원산지표기가 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캡슐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Q 우리나라에서 아성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캡슐에 원산지표시 요구를 할 수 없는데 연품이 아닌 반드시 캡슐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표시가 원칙이나,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용기에 봉인되어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물품의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 귀사에서 질의한 첫번째 캡슐토이의 경우에는 견고한 캡슐안에 소형장난감(토이)과 일본어로 표시된 카다로그가 들어 있으며, 상거래 관행상 캡슐(용기)을 뜯지 않고 동전판매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캡슐(용기)과 카다로그(전면)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
- 두번째, 꼬마인형(가샤폰) 6개들이 세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안에 소형장난감과 역시 일본어로 된 카다로그가 들어 있으며, 뜯어 볼 수 있는 포장으로서 현품과 카다로그(전면)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아울러, 원산지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고(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제3항), 원산지로인을 초래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그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 표시(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제2항)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카다로그의 일본어는 소비자가 일본산이라는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이므로 카다로그 외부에서도 잘 볼수 있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시 카다로그에 “B.CHINA”로 표시함은 부적절하고 “Made in China”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 만약, 캡슐토이가 주로 자동판매기에 주입판매되어 소비자가 구매시 캡슐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 외부에도 스티커부착, 꽃말부착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귀사가 도소매상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에도 원산지표시하여야 함을 서면으로 통보(재양도시에는 양수인이 재양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하여 양수인이 원산지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3항)

■ 질 의

- Air Cap 봉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택배업체나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임
- 택배용 봉투로 사용될 예정인 바 외부에 원산지표시가 된 경우 마치 포장된 상품이 “중국산”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해 라벨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봉투가 손상될 수 있음

Q 수입자는 일정한 묶음(예 :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당해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품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일정묶음(봉인)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판매단위(묶음)의 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 귀하가 제출한 Air Cap봉투는 일반봉투에 비하여 고가이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문방구에서 낱개로 구입하여 사용
- 따라서, 회사가 대량 주문하여 봉투에 회사의 상호 및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으나 <규정 제6-2-7조(현행 제80조)제2항>
- 봉투표면에 아무 표시가 없거나 시중유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접착테이프보호지나 봉투끝부분 등 현품상에 원산지를 표시(예 : 봉투원산지 중국)하여야 함

■ 질 의

- 국내에서 의료용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신부전증 환자용 복막투석액(국내 제조)을 수입하기 위한 PP포장용기(투석액백과 배액백으로 구성)를 이태리에서 수입시, 동 용기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P.P.재질의 투석액백(Bag)에만 “제조원 : 한국○○○의료기(주)”, “판매원 : 한국○○○(주)”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Q 이를 원산지오인표시로 보아 제조원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 “made in Italy”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투석액백과 일체로 포장하여 판매되는 배액백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첫째, 질의물품인 PP포장용기는 투석액백과 배액백이 호스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고 각각 분리되어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투석액백에만 원산지표시를 하여도 가능
- 둘째, 질의물품인 수입용기(이태리산)는 1회 사용후 폐기되는 용기로 판단되므로, 귀사가 직접 제조하는 국산제품(복막투석액)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실수요자가 되므로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현행 제80조))
- 다만, 귀사가 제출한 견본품(현품)에는 “제조원 : 한국○○○”, “Manufactured by : ○○○ Korea. Ltd”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용기 수입후 주입될 내용물(복막투석액)의 원산지(한국)와 수입되는 포장용기의 원산지(이태리)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의 원산지를 별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Bag(Container) made in Italy”와 같이 표시함이 적정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 및 제6-2-7조(현행 제80조))

■ 질 의

- 국내에서 실용신안특허제품인 각도조절 마우스패드 제조업체로 국내 인건비 사정으로 고무충진제를 넣은 손목보호대(하단, 고정프라스틱 포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 및 인쇄한 마우스패드 판과 결합하여 마우스패드 완제품을 생산함
- 이때 수입물품은 완제품에 고정되어 분리되지 않으며 원가 2,100원 중 수입물품의 비중은 500원 정도임

Q 원산지표시대상 여부

■ 회 신

- 본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단순히 조립(단순공정)되기는 하지만 수입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원가 2,100원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0원 정도로서 4분의 1밖에 안되고, 대부분의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당해 마우스패드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별도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조립 후 분리하기 곤란한 물품이라면, 마우스패드의 부품 내지 원자재로 인정이 가능하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제9호 내지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소포장상 원산지표시대상 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설혹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원자재로 인정이 안된다 할지라도 제품의 품질에 손상이 없도록 이면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 의

- 줄자를 제조하여 내수 및 수출판매하는 업체로서 인건비 사정으로 중국에서 일부제품을 생산 수입코자 함

수입물품 : 9017-80-1000, 줄자, 스틸제 5.5M

1. 현품상 줄자 내부 18cm부분에 “made in China” 표시
2. 제품포장 뒷면 품질표시부분에 제조원 : ○○○ 청도공장, 하단부에 “Made in China” 표시
3. 현품 전면부 및 뒷면 상단에는 “○○○” 상표만 기재

■ 회 신

- <적정>
- 전면과 후면에 “○○○” 상표가 크게 표시되어 있으나
- 현품을 분리할 수 없도록 포장되어 있고, 포장 뒷면 하단부에 식별가능한 정도의 글씨로 Made in China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며, 줄자 현품의 18cm 부분에도 동일한 표시가 되어 있어 적정표시로 판단됨

■ 질 의

- 양봉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꿀병도 제조하고 있음
- 국내여건상 생산비용이 높아 중국에서 플라스틱제 꿀병 Blank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열 성형기에 넣어 꿀병을 제조 판매함

Q 이때, 수입하는 플라스틱 Blank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는 꿀병 제조용 플라스틱 Blank는 사실상 완제품에 준하는 상태로 보이며 세번(HS) 또한 3923.30호에 분류되어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다만, 민원내용과 같이 위 플라스틱 Blank를 수입 후 귀하께서 국내에서 가공(병 모양이 늘어나고 변형)하여 판매할 예정이고 가공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은폐·제거된다면 수입신고시에는 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완성 가공품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꿀병의 원산지 : 중국” 또는 “Bottle Made in China”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림(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 제1항제1호, 제6-2-7조(현행 제80조))

■ 질 의

- 본회사는 잉크젯카트리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나 포장재는 중국에서 인쇄해 오는 것이 단가도 싸고 품질도 좋음

Q 이때, 잉크젯카트리지 포장 박스에 “Made in Korea”를 인쇄해 오려고 하는데 가능한 지

■ 회 신

- 본 물품은 국내생산제품인 잉크젯카트리지의 포장 용기로서 지제 박스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점과 소비자의 원산지 판단 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하단부에 “Printed in China”를 인쇄함이 적정함

■ 질 의

- 색연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색연필은 날개단위로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2000년경 질의회신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최근 중국 등 저임국에서 생산한 색연필이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통관 후 시중에서 포장을 제거하여 판매되고 있음

Q 세관에서 수입검사단속을 철저히 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절한 색연필이 통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므로 날개단위로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나 밀봉하여 뜯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상에도 표시가 가능
- 밀봉포장이 아님에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색연필 등 필기구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디지털카메라로 (원산지 및 상표가 잘나오게) 사진을 찍어 관세청 공정무역과로 보내주시거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을 아시는 경우에는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빠른 처리가 가능

■ 질 의

- 소비자의 고발에 의해 우리세관에서 조사하는 주방용품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관련사항
- 본 수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미표시로 처벌하여야 하나 주조할 수 있음에도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여부에 이견이 있음
 - 갑론 : 주방용품의 경우 원칙적인 표시방법인 주조, 각인 또는 인쇄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정표시로 보아야 함
 - 을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인 표시이외에도 공산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거 견고하게 원산지표시(스티커)한 경우 인정해야 함
 - 병론 : 원산지만 표시된 작은 스티커라도 표시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소비자를 속인사실이 없으므로 인정해야 함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등의 방식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스티커 등에 의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의하여 품명, 규격, 수입자 등 타 상품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세청장이 시달한 「원산지표시방식및위반물품처리에관한지침」(통관기획47215- 658, '00.7.24) <별표1>의 내용에 따라 견고한 스티커(공산품품질표시, 식품축산물검역표시)에 의한 표시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됨(을론)

■ 질 의

- 목기의 박스가 지저분하여 목기를 수입 후 국내에서 재포장 판매하거나 수입한 박스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목기, 수입목기박스, 재포장박스 중 어디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 목기의 칠작업은 6회 정도 해야 하나 3-4회 정도 칠작업 후 사포질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가공 마감칠작업을 한 후 판매시 수입목기, 수입목기박스, 재포장박스 중 어디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 회 신

-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되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각인 등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고 현품과 포장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목기는 조각 후 대개 6-7회의 칠작업이 이루어지나 주요한 공정은 초벌/재벌 각기공정과 초벌칠(백골)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목기를 조각하여 색칠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나, 조각시 목기에 상호 또는 제작자등을 각인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도 각인하여야 하고, 각인없이 3-4회칠만을 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밑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지워지지 않게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함
- 아울러, 색칠하지 않은 목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조각목기와 색칠후 목기의 HS 6단위가 4419.00으로 동일하므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기의 원산지는 조각한 국가로서 판매전에 현품과 포장박스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국산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후 포장박스에는 각각의 종류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첨부한 장신구(귀금속) 포장용기(종이박스) 및 주머니의 원산지표시방식이 적정한가를 미국 본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아 사전검사를 의뢰함

■ 회 신

- 1회용 용기로서 견품의 앞면에는 “○○○ & Co”이 표기되어 있고, 종이박스 뒷면과 주머니의 안쪽에는 “Pouch made in USA”라고 각각 표시되어 있음
-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현행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질 의

- 등나무, 대나무, 야자피, 왕골 등으로 만든 바구니, 모자 등을 선적지에서 원산지표시 스티커 및 한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하였음에도 부적절한 원산지표시라며 스탬프 또는 라벨 미싱작업 등의 보수작업을 요구함
- 본 건 수입물품들은 일반활인점에서 바코드 및 원산지표시작업을 다시 하여 상품진열대에 진열 판매하므로 요구사항은 부적절하고, 대나무 및 등나무에는 미싱작업이 불가능하고 야자피모자에는 바니쉬되어 있어 스탬핑작업시 쉽게 지워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불합리하며, 보수작업시 적자를 면키 어려움

■ 회 신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고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이 검사결과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6-2-10조(현행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용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해 주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동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등사/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의 특성상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질 의

- 당사는 페인트를 제조하여 내수 판매 및 수출하는 회사임
- 페인트 제조용 원료인 알킷수지(Alkyd Resin)를 당사의 제조 방법에 따라 중국에서 OEM제조한 후 180kg단위 스틸드럼으로 팩킹하여 수입하려고 함

Q 이 경우 드럼상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기타 표시할 내용이 있는 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대상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1항, 별표6-1)하고 있으며, 알킷수지(HS 3215)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임
- 원산지표시품목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체가 원재료로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 원산지표시방법은 품목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견고하게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내지 제6-2-9조(현행 제82조))

■ 질 의

- 당사는 기념품인 목제 축구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Q 축구공은 당회사에서 만드나 축구공을 놓기 위한 좌대는 주된 물품이 아니므로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바, 부속품인 좌대를 “중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당사제조 축구공마저도 중국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표시수입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원칙적으로 목제 받침대는 HS 4420에 속하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현행 별표8))
- 그러나, 본 물품은 국내 생산되는 장식용 축구공의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여 축구공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물품이므로 부분품으로 인정되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

■ 질 의

- 당사는 홍콩에 액세서리 부품을 수출하고 일부는 완성품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통관시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귀걸이/펜던트, 브로우치, 반지 : 소형이며 황동 또는 주석 캐스팅에 도금 헤어핀 : 플라스틱 재질 뒷면에 프랑스산 클립을 부착,
귀걸이/펜던트,브로우치, 반지등은 소형이므로 개별봉지에 원산지표시 또는 종이 택을 끈으로 달고, 헤어핀은 프랑스산 클립을 사용하므로 "D Clip made in France"로 표기하려고 함

Q 소비자에게 판매전 제각의 위엄도는 동일하므로 12개/DOZ포장 등 저비용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문의?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단위로, 당해물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쇄/주조/식각 등 견고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표시비용이 과다하거나 상거래관행상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은 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쇄/식각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꼬리표등의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함
- 귀사가 견본을 제출한 귀걸이와 머리핀은 소형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하므로 최소비닐포장에 인쇄할 수 있음
- 한편, 머리핀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당해 부품명 + Made in 국가명"등과 같이 당해 부분품의 원산지와 완제품의 원산지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부분품의 원산지표시는 완제품의 원산지표시보다 클 수 없음

■ 질 의

- 당사는 스리랑카 및 독일 등에서 목재로 만든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아래의 제품들은 수제품이고 핸드페인팅이라 물품본체에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1) 동물알파벳퍼즐 : 알파벳 순서대로 맞추는 동물퍼즐
 - 2) 점핑잭 : 줄을 잡아당기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인형
 - 3) 병원차퍼즐 : 앰블런스 모양을 맞추는 퍼즐놀이
 - 4) 알파벳 : A-Z까지 2개씩 있는 알파벳 세트
 - 5) 요요 : 모든 제품이 비닐포장 수입되어 수입된 상태로 판매
 - 6) 모형과일 : 바나나/사과 등 형태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상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나 상거래관행상 최종소비자에게 용기 등에 담아 봉인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원산지 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2조(현행 제30조))
- 귀하가 질의한 퍼즐 등 목재완구(핸드페인팅)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 가. 목재퍼즐은 수개의 조각을 조립하여 하나의 형태를 완성토록 되어 있고 세트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사실상 개개의 조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현품에 원산지표시할 경우 당해물품의 가치가 저하되므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나. 점핑잭, 요요 및 모형과일 등 기타의 목재완구는 개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상 식각이나 특수인쇄는 상품의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4조(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함이 타당

■ 질 의

- 소음방지용 귀마개는 Ear Plug, Stick, Plastic Case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는 물품임

Q 이 중 Ear Plug만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Stick, Plastic Case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 신

- 본건 수입물품 “Ear Plug”는 소형, 저가의 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하며, 수입된 상태대로 판매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Stick, Plastic Case등과 결합하여야만 상품성 있는 완제품이 되는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수입시에는 최소포장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타물품과 결합시키는 자는 “Ear Plug”와 여타 구성품의 원산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케이스상에 “Ear Plug made in US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드럼/기타를 만들어 내수로 공급하는 업체임
- 수입물품 검사결과 카톤포장박스에는 made in Taiwan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품상 원산지표시가 스티커로 되어 스크린인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Q 이걸 수입품은 개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드럼세트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며, 더구나 식물이인 껍쇠나 울더 등에는 스크린인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과 그 포장용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수입 후 제조과정을 통하여 완제품인 드럼세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부분품과 드럼을 스탠드에 연결시켜주는 연결부품 및 기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헤드머신 등은 드럼/기타 등 주된 악기의 부분품으로서 상거래 관행상 일정단위로 포장하여 수입되고 국내에서 주된 악기와 일체로 재포장되어 판매될 예정이므로 원산지관리세칙 제6-2조(현행 제29조)제3호에 의거 최소 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질 의

- 폐사는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국의 화장품분무기 생산 업체와 계약하여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분무기자체에 원산지표시를 위한 별도 금형제작이 어려우며 낮은 단가에 비해 추가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상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화장품의 원산지를 오해할 수 있음
- 따라서, 300개들이 박스에 담겨 수입하는 경우 박스단위로 표시가 가능한지요? 당회사는 박스단위로만 판매하며 분할판매는 하지 않음

■ 회 신

- 귀사가 수입하는 화장용분무기는 수입된 후 다른 물품과 단순 결합되어 유통되는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면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산지관리세칙 제6-5조(현행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당시 당해물품만의 원산지(예 : Sprayer made in U.K)임을 최종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품상에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품 명 : 방석류(HS 9404호)
- 뒷면에 지퍼 처리된 방석류 제품으로 지퍼 안쪽에 품경법에 의한 품질표시 사항 라벨을 봉제 방식으로 부착하고, 동 라벨에 원산지표시

<제품 사진>



○ 질의내용

- 질의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서 규정한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을 위반(부적정 표시) 하였는지 여부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회 신

- 질의물품(방석, HS 9404호)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에 의해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이며,
-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원산지 고시 제5-3조(현행 제36조)에 의하면 원산지의 표시위치 등
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부적정 표시에 해당하고,
- 질의물품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과정에서 쉽게 확인하기
힘들고, 주의를 기울여 제품 뒷면의 지퍼를 열고 그 안쪽에 달린 라벨을
꺼내보아야 겨우 확인 가능한 것이므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의
원산지표시 원칙을 위반하였음(부적정 표시)
 - 따라서, 질의제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제품
외부에 봉제라벨 방식으로 표시해야함
- ※ 참고로, 방석류와 유사한 쿠션피, 베개피, 이불피 등도 지퍼 안쪽에 표시
되었다면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

■ 목 적

- 1회용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 국제적인 산업분업화의 가속 등 새로운 경제질서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능동적 대응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포장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침

- 포장용기만 별도로 수입되면서 1회용 사용으로 폐기되는 경우

《 일반기준 》

-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표시
-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 원산지표시 면제

《 수입시 “한국산” 표기에 대한 예외 인정기준 》

- 수입후 국내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거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된 경우
-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수입되는 포장용기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에만 사용되어지도록 제작됨이 확인되고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거나 납품 계약에 의한 납품임이 증명되는 것을 말함
-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및 한국산 증명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
- 신고자는 부가가치 기준에 변경이 있어 “한국산” 인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한국산” 인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심사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한 가격비율 산정기준 》

- 제 조 원 가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의해 계산된 제 조 원 가로서 다음을 의미
 - 제 조 원 가 = 직 접 원 가 + 제 조 간 접 비
 - 직 접 원 가 = 직 접 재 료 비 + 직 접 경 비 + 직 접 노 무 비
 - 국내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중간원료(HS 6단위 변경)를 제조자가 구입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인정(다만, 단순가공에 의한 제조는 제외)
- 수 입 원 료 가 격 (CIF 기준)
 - 제 조 회 사 가 직 접 수 입 하 는 원 료 (제 3 자 수 입 분 을 수 입 된 원 상 태 로 구 입 한 것 도 포 함) 의 수 입 신 고 가 격
 - 해 외 임 가 공 물 품 의 경 우 수 입 가 격 (CIF 기준) 에서 수 출 가 격 (FOB 기준) 을 제 외 한 가 격 을 수 입 원 료 가 격 으 로 인 정

《 “한국산” 표기인정 내용 기록관리 》

- 세관장은 포장용기에 “한국산” 표시를 인정한 경우 아래의 양식에 의거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과	수입회사명	수입물품명	수량	금액	제조회사명	국내제조물품명	한국산 인정기준

■ 질 의

- 수입예정인 ‘주방용 칼’은 플라스틱 진공포장으로 포장안에 지제 바탕이 있어 원산지(중국)가 표시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사항 스티커에도 원산지(중국)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회 신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현품 확인결과, 주방용 칼은 플라스틱 진공포장되어 봉인되어 있는 물품 상태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봉인포장 판매가 아닌 현품단위 판매시,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냄비뚜껑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본체와 결합하여 냄비 완성품을 만들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보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물품이 HS6단위가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본 물품은 완성물품으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도 HS6단위가 변경되지 아니함.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배 경

- 수입자가 우리청에 골프채의 조립공정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제출('07.9.11)
- 우리청은 지식경제부에 골프채 조립공정이 단순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08.4.7)
- ⇒ 골프채 조립공정은 누구나 간단히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만큼 “단순 가공활동”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08.4.14)

■ 지 침

- 골프채 조립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7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 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할 것(지식경제부의 질의회신)
 - HS.6단위 변경 : 9506 HS.9506-39 ⇒ HS.9506-31
- 골프채 조립공정 수행국가의 “made in 국가명” 원산지표시 허용
 - 현행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현행 제30조)제1항 <별표6 (현행 별표4), NO 298>과 같이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 방식으로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의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여 “made in 국가명”으로 원산지표시방법도 허용

■ 질 의

- 독일 ○○사의 상표를 일본의 M사에 의뢰, 일본 또는 중국에서 골프클럽을 제작 수입하는바 shaft 중간부분에 “Made in JAPAN” 또는 “Made in China”로 음각하여 훼손이 불가능하나 색을 넣지 않았음

Q 색을 넣는 것은 별도의 생산공정 변경이 필요한바 원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용증가를 가져오므로 각인만으로 원산지표시가 적정인지?

■ 회 신

- 원산지는 상표 또는 제조원 아래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Head 및 Grip없이 Shaft만을 수입할 때에는 “Shaft made in 국가명”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우리세관에 ○○사가 수입신고한 중국산 골프백의 적절한 표시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함
- 물품상태 : 골프가방의 외부에는 국가명 등 오인표시는 없고 상표만 있으며 가장 큰 주머니인 신발주머니 안에 수입업체명 및 “made in China”표시된 작은 라벨이 박음질되어 있음
- 갑론) 골프백 하단 플라스틱 옆 부분이나 골프백 바닥의 상표옆에 원산지 인쇄
- 을론) 골프백에서 가장 큰 주머니인 신발주머니 안쪽 직물부분에 스크린인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제거할 수 없고 소비자가 볼 수 있음
- 병론) 최종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골프백 외부 상표 옆부분에 원산지표시
- 정론) 오인표시가 없는 상태이고 소비자는 골프백 주머니를 열어볼 것이므로 골프백 큰 주머니 안쪽에 부착한 직물제 원산지표시라벨을 인정

■ 회 신

- 특정국가의 유명상표라 하더라도 실제 제품의 생산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품에 표시된 상표 및 홈페이지 주소만으로 오인표시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고
- 질의물품과 같은 가방류의 원산지표시 관행 등을 감안할 때 표시위치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귀 세관 검토의견 중 “정론”이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됨
- 다만, 활자체의 크기/선명도, 부착의 견고성 등에 대해서는 귀 세관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 질 의

- 당사는 골프용품만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앞으로 골프채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할 예정임
- 골프채생산은 상당한 기술축적을 요하므로 향후 몇 년간 일부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할 예정임

Q 이때, 골프채 헤드는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샤프트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통관할 경우에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는지요?

■ 회 신

- 골프채(HS 9506.31)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서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에서 수입할 골프용 부분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하여 골프채를 만드는데 사용될 물품이므로 제조과정에서 당해물품만이 그 나라의 원산임을 명확히 하여 표시(예 : Head made in Taiwan, Shaft made in Japan)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함

■ 질 의

- 「원산지고시」 별표 6 가구류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에서 조립식가구 정의

「원산지 고시」 별표 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HS	물품명	적정 표시방법	비고
9403	가구(책상,침대,문갑,화장대,장롱,거실장,식탁)	○현품에 원산지표시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 회 신

- ‘조립식 가구’는 질의와 같이 해상·육상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상판 및 하부(다리 등)를 별도로 분리한 외포장 상태의 물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되는 거래형태인 “CKD(Complete Knock Down)”를 말함.
- ‘조립식 가구’는 ‘DIY* 가구’로서 최종구매자가 조립·분해가 용이하며 여러 가지 부품을 모아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 부품 하나하나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DIY(Do It Yourself) :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엄밀하게는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거나 제작하도록 한 상품을 말함.

■ 질 의

- 중국에서 청첩장(HS 4909)을 수입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신랑신부 이름, 예식장, 일시 등 기입후 300~400매씩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단위에 할 것인지 현품에 표시할 것인지 여부

■ 회 신

-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물품에 해당 여부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
- 최소포장단위 인정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 최소포장단위 인정 기준 중 통상적으로는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
- 동 물품이 수입 통관 당시에는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고, 상거래 관행상 최소 포장단위로 판매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최소포장단위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포장 및 용기에 봉인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

■ 질 의

- 일부 차종의 안전유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자동차사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생산업체임

Q 수입하고 있는 안전유리가 자동차사에 전량 납품되어 자체에 정착되는 것이 실질적변형인지 단순한 가공활동인지 여부

■ 회 신

- 수입하는 자동차용 안전유리가 수입통관후 전량 국내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된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에 해당되며, 또한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국내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 따라서, 귀사가 수입하는 자동차용 안전유리가 수입통관 후 전량 국내자동차 제조업체의 자동차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것으로서 실수요자인 국내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직접 납품되는 경우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됨

■ 관련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

■ 질 의

- 수입물품 : HS 8439.39, Conveyor Tension Parts (Take Up/UCM 204A)
- 프레스, 단조, 주물 및 기계부품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로 주문을 받아 콘베이어(HS 8427)를 제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동 콘베이어 장력조정을 위한 부분품을 수입하였으며, 동 수입품은 철재로서 중간에 직경 4.5cm의 볼베어링을 장착한 후 볼트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

Q 수입품은 기계제조를 위한 부분품인 바 표시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콘베이어를 제조하거나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동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표시면제 또는 최소포장상 표시 가능하지만 수입 후 추가 가공 없이 또는 단순한 가공을 하여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라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하단부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미국 ○○사의 지사로서 본사 및 세계 각지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지식 전동공구 및 가정용 공구류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Q 여러 가지 제품 중 일부 품목은 세트단위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햄머드릴, 알카라인드라이버 등의 전동공구와 비교적 크기가 큰 수동 드릴손잡이, 망치, 플라이어, 알카라인배터리 등에는 현품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나머지 드릴비트, 드라이버팁 등이 이들 공구와 원산지가 같고 세트로 판매된다면 세트상자에 전체적인 원산지표시(예 : Set made in China)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질 의

- 최근 자동차대리점을 통하여 ○○○상표 자동차를 수입하였는바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동 자동차회사는 독일, 브라질 및 인도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같은 모델이라도 생산지별로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구입한 자동차에서 원산지표시를 찾아볼 수 없음

Q 자동차/오토바이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 표시되어 있는지

■ 회 신

- 자동차는 상당히 고가의 물품으로서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주로 운전석문과 차체사이의 차체부분에 음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뒷문 유리창에 연비등 주요 사항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음
- 일반소비자는 잘 알기 어렵지만 차대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하여 어느 나라에 있는 자동차회사의 어느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알 수 있는바,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본네트를 열면 엔진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며, 간혹 운전석 앞쪽 또는 트렁크안에 차대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아울러,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핸들밑부분이나 엔진 또는 엔진옆의 차대 부분에 원산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

■ 질 의

- 공구상가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금번 도어클로저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베어링을 수입하게 되었음
- 본 건은, 수입전량 제조업체에 납품할 물품이고 실수요자도 중국산인 것을 알고 있으며 납품계약서 등 사실여부 증명첨부를 할 수 있음

Q 이때, 베어링의 내경은 10mm이나 외경이 24mm에 달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10개단위 최소포장에 강력스티커로 표시가 가능한지

■ 회 신

- 볼베어링 중 내경 8mm이하 또는 두께 3mm이하인 것은 당해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소포장상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크기의 것은 현품상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볼베어링의 내경 8mm이하 또는 두께 3mm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2009. 7. 27 개정)

- 다만, 내경 8mm초과 또는 두께 3mm를 초과 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 후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경우(납품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제6호 및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질 의

- 당사는 기아차/현대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 하청공장에 의뢰 제작하여 수입하고자 함

Q 이때, 당사가 직접 제조사가 아님에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이므로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지?

■ 회 신

- 질의하신 자동차부품(프론트코일스프링등 41개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 참고로, 귀사의 경우 실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을 수입대행하는 것이므로, 동 부품수입시마다 납품계약서등 현대/기아자동차가 실수요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3조(현행 제30조))

■ 질 의

Q 자동차부품인 방향전환 보조장치(MPS)의 기계부품을 수입하는데 원산지 표시상태의 적법한 표기방법 및 부착위치

■ 회 신

- 동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및 별표6-1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면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곳(예 : 몸체 앞면)에 각인, 식각 또는 특수인쇄 등의 방법으로 “Made in China”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본사가 수입하려는 것은 자동차의 정밀모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실제 차의 원산지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가치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음

Q 따라서, 제조사의 포장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바, 연품에 꼭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당해물품에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당해물품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을 훼손 또는 실질적인 가치손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포장용품에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 귀사가 수입예정인 소형모형자동차의 경우 정밀한 가공을 한 소형물품이라는 점에서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물품의 길이가 5cm정도라면 생산과정에서 표시공간부족, 표시비용의 과도, 심각한 가치손상 초래 등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로는 판단되지 않음

■ 질 의

- 폐사는 본사의 각 공장에서 생산된 극소형 볼베어링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 볼베어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나 규격이 극히 작은 (외경 3mm이하) 초정밀도(Micron)의 성능유지상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예외규격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Q 원산지표시방법은 영문으로 표기시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s of 국명”의 방법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규격이 극히 작아 표시 면적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극소형 볼베어링(내경 12mm이하)에 대하여는 국명(예 : Thailand)만을 표시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과 포장용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귀사가 질의한 볼베어링은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의 경우 (J-list) 외경 5/8인치(약15mm) 이하이거나 또는 Shield(뚜껑)이 없어 브랜드, 베어링번호, 원산지 등을 현품에 표시하기 불가능한 경우 현품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같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때에는 최소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볼베어링의 내경 8mm이하 또는 두께 3mm이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2009. 7. 27 개정)

- 또한 베어링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Made in 국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와같은 표시를 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명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 질 의

- 수입되는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본체 및 주요 부분품과 최소포장에는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같이 세트포장 수입되는 케이블에는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Q 동 케이블에 대하여는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으로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현행 제3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원산지표시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등의 본체 및 주요 부분품과 같이 세트 포장되어 수입되는 케이블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현행 제3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 관련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현행 제32조)제1항제6호

■ 질 의

- 수입물품 : HS 8541.21, 트랜지스터
- 당사가 수입하는 ○○사의 반도체는 'Assembled in 국가명' 방식으로 박스상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음. 현품에는 약어이기는 하나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음

Q 관세청고시에서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표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품상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크게 훼손되는 경우는 최소 포장상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Assembled in 국가명' 방식은 정확한 원산지국을 알 수 없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보기 어렵기에 현품상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트랜지스터를 포장한 대롱에 'Made in 국가명' 방식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제1항



■ 질 의

○ 수입물품 : HS 8509, DustButer(소형청소기)

○ 날개 단위 또는 박스단위로 포장하여 거래되는 충전용 소형 청소기임

Q 연품 위에는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기 바닥부분에 전기용품안전관리
법상 표시를 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고, 아답터에도 원산지를 표시 여부
적절한 원산지표시인지 여부

■ 회 신

- 현품 윗부분에는 상표 및 전압표시 외에 다른 표시가 없고, 상표만으로는
원산지오인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어려움.
- 하단부에는 스티커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표시를 하였으나 떼기 어렵고,
스티커 제거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
- 또한, 충전세트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음(다만,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유지)



■ 질 의

- 수입물품 : HS. 8525.70, 휴대폰 전화기
- 중국에서 휴대폰을 제조 현품(بات데리함 안쪽)에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박스에는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였음.

Q 휴대폰은 소비자가 직접 연품을 보고 구입하는 상품이므로 연품에 표시된 경우 박스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박스에 원산지를 오인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인정 가능 여부

■ 회 신

- 휴대폰 현품의 경우 다른 곳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관행상 бат데리함 안쪽에 표시하고 있어 인정 가능함
- 다만, 박스에는 개봉한 경우 부분품분실의 책임이 없다며 봉인되어 있고, 박스상에 한글로 설명하였으며 국내 연락처와 인터넷홈페이지등 원산지를 오인할 요소가 있어, 국내 소비자상담센터 등 오인요소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여건상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당사에서 반도체 Chip(Die)를 제조하여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여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할 경우가 있으며 이때 현품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고 포장박스에는 주요재료의 생산지와 조립지를 같이 표기

Q 이러한 경우 수입 또는 국내판매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4조(연행 제37조), 제5-2조(연행 제35조) 및 제5-3조(연행 제36조)에 의하여 위표시물품, 오인표시물품 또는 부정표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국내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한 후 중국에서 반도체모듈로 임가공하는 바 현품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였으나, 포장박스에는 공정상 수출품과 구별이 곤란하여 ‘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라고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건 검토한 결과 반도체모듈의 경우 소비자가 구입하는 것은 소매용 현품 모듈단위로서 박스단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박스에 표시된 내용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조 공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므로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 질 의

-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필요장비를 수입 또는 국내조달한 후 통신장비를 세팅하여 납품하거나 SI업체에 제공하는 회사로, 수입하는 물품은 음성/팩스/신호처리 보드류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플랫폼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에는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수입대행을 포함)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가 수입하는 보드류는 통신장비의 부품이며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임

Q 당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SI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당시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인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 제조용 부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고, 제조공정에 투입할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
- 귀사의 경우, 보드를 수입하여 제조공정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제조업자에게 통신장비 제조용으로 공급한다면 현품표시를 면제할 수 있으나, 소요량 계산서 또는 납품증명서 등 제조공정에 투입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 질 의

- 자가발전 후레쉬를 제조하는 회사로 환경연합회에 납품 판매해 왔음
- 국내에서 설계주문한 바에 따라 중국에서 프러스틱사출물(후레쉬케이스)에 수동발전장치(4.5v)를 조립하고 수소축전지(4.5v)를 추가구입하여 수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회로구성과 제어를 위한 PCB, 발광용 LED 및 관련부속품을 구입하여 자가발전 후레쉬로 조립할 예정임

Q 종제조원가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 및 부가가치율은 50.2%로 후레쉬 미표시 수입이 가능한지?

■ 회 신

- 수입품은 후레쉬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발전장치와 축전지만 있고, 부품 구성비를 살펴볼 때 후레쉬부품(8513.9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관세평가 분류원의 회신이 있고,
- 국내에서 손전등(8513.10-2000)으로 HS 6단위가 변경되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수입 가능

■ 질 의

- 중국에서 제조된 전화기 및 턴테이블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이 MIC(정보통신부 인증표시)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스티커에 원산지표기를 해서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 지
 - 전화기 : MIC 스티커내에 Made in China 표시
 - 턴테이블 : 전기용품안전인증 스티커내에 Made in China 표시
- 안전인증이 필요없는 DC아답터를 사용하는 턴테이블의 경우 뒷면에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Made in China"로 인쇄해도 되는 지 여부

■ 회 신

- 전화기 및 전기제품은 관련법에서 형식승인 또는 안전인증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스티커에 제품명칭 등과 함께 현품 뒷면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고,
- 제출한 사진과 같이 제품 뒷면에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명확한 색깔로 기재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됨

■ 질 의

- 당사는 각 종류의 리모콘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 인공위성수신기 생산 수출업체에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음
- 최근 바이어의 단가 인하압력으로 인하여 납품처로부터 단가인하요청이 있어 부득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려니 세관에서 원산지표시를 요구함

Q 만약, “Made in China”로 표시하면 바이어로부터 추가 인하요구가 있어 곤란하다고 아는 바 수출용에 사용할 물품을 증명하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할 수는 없는지

■ 회 신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6-2-2조(현행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전까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조용부품등 동 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상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등의 경우에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하나 “수출용”이라 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는 없음
- 또한, 수출예정인 수입물품(완제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면제시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하는 물품과 구별이 불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고, 오히려 국내제조업체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질 의

- 가정용 소형분수대를 수입하여 설치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외국으로부터 소형분수대를 수입시 포장용 박스에 품명, 규격, 회사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또는 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어떤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종적인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따라서, 제조단계에서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위치에 인식하기 용이한 글자체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함
- 그러므로 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현품에 표시하더라도 바닥에 표시 또는 스티커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수대의 경우 특별하게 지정된 위치는 없으나 분수대 옆부분에 주조하여 바탕색과 구분되게 페인트로 색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금속철판을 붙이거나 페인트로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함
- 다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품명, 규격, 제조원, 수입원(판매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스티커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인정이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스티커도 견고하지 않거나 글씨체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별도로 원산지만 표시한 스티커로 부착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질 의

- 유아용학습기 ○○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당 제품에만 맞도록 중국에서 바코드스캐너를 제작하여 수입 후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함

Q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4호의 제조에 직접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 신

- 질의하신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4호의 “물품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된 후 최종 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수입물품(바코드스캐너)에 “스캐너원산지 :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질 의

- 당사의 고객은 플라즈마TV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이 플라즈마TV를 구성하는 스피커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설치 후 세트로 수출하고 있음

Q 이때,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수출하는 플라즈마TV의 세트로 구성되는 스피커에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 회 신

- 동 품목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여부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1호 참조)

가. 동 스피커의 용도는 수출용에 사용되는 외화획득용임

나. 동 스피커는 한단계이상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수요자에 의해 플라즈마 TV 제조과정에 쓰이고 있음

다. 본체인 플라즈마TV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제품을 설치함으로서 완성품이 됨에 따라 플라즈마TV 구성품으로 판단됨

- 위 내용에 의해 동 품목은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원산지표시 면제대상품목이 될 수 있음. 단, 위 판단의 기준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한 판단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질 의

- 당사는 전기곤로를 수입하고 있음

Q 전기곤로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데 포장박스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 회 신

-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는 당해물품 자체와 그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것이 건전한 상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당해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에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질 의

- 당사는 해외에서 하이파이 오디오를 수입할 예정임

Q 하이파이오디오 제품 포장속에 포함된 리모콘의 원산지가 오디오제품과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리모콘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리모콘이 별도로 포장된 경우 원산지표시는?

■ 회 신

- 오디오와 리모콘이 결합되어 하나의 상품으로서 수입신고되고 국내에서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당해 리모콘은 부속품으로서 성격을 갖게 되므로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리모콘이 오디오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의 박스로 수입되는 경우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Q 한국에 수입되는 반도체에 있어서 반도체 칩 자체보다 반도체 용기에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는지? 이 규정은 DIMM, SIMM등의 반도체 모듈에도 적용되는지?

Q 두글자의 ISO코드로 원산국의 자체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지?
예) The United States 대신에 “USA”

Q 원산지명 앞에 “Made in...”, “Product of ...” 혹은 유사한 표현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 회 신

- 수입자가 반도체나 반도체모듈을 전자제품의 제조용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 수입자가 자기 책임하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원산지 국명을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USA”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허용되고 있음(대외무역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6항)
- 원산지표시에 있어서는 “생산”을 나타내는 “Made in”등과 국명을 같이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필 등과 같이 소형물품으로서 국제적인 상관행상 “국명”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이도 허용될 수 있음(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제4호)

■ 질 의

- 입력장치(터치스크린, 카드리더기)와 출력장치(영수증프린터,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POS시스템을 수입하고 있는바, 원산지는 각각 상이하며 EMC 라벨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음

Q 이 물품을 조립하여 수입할 때 박스상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립국을 원산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구성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각각 원산지가 다른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일본에서 하나의 세트로 조립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있어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후에 조립된 물품의 외포장 상에는 각각의 원산지를 나열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단순조립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대외무역법 제23조 (현행 제33조))

예) 입력장치 원산지 : ○○국
출력장치 원산지 : ○○국

■ 질 의

- 수입물품 : 치과용 충전재(HS 3006.40-2000)
“Made by”, “Manufactured by”가 아닌 공장그림으로 표기

Q 공장그림으로 표기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 신

- “Made in 국가명” 또는 “Manufactur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등이 아닌
공장그림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은 규정된 수입물품의 적절한 원산지표시
표시방법이 아님

■ 관련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

■ 질 의

- 핀란드산 제조 상품으로 유럽 및 일본 등 여러나라에 수출중이며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음

“Paperiset Oy, 81720 Lieksa, Finland, Made in the EU”

Q Paperiset Oy는 제조회사 이름이며 제조국인 Finland가 정확히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는 적다고 판단되는데 적정 여부는?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가명’ 또는 ‘Made by 회사명, 국명’ 방식으로 표시토록 규정됨.
- 본 물품에 표시된 Paperiset사는 ‘종이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상표권자인 ‘Dellipap’사와의 관계도 표시되지 않아 Finland가 아닌 곳에서 생산되었을 수도 있다는 오해가 가능함



■ 질 의

-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가방을 수입하고 회사로 라벨 디자인 통일작업에 의해 다음과 같이 라벨을 작성하여 가방 내부에 봉제하거나 철제 태그(Tag)으로 부착하여 수입하려고 함

<라벨 예시>

This ○○○○ Product has been designed in London and Crafted in China to the highest standards that we have set and maintained since 1800.

We hope you will enjoy using it.

XXXXXXX

Q 원산지표시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저임국산 물품 등을 선진국산 물품등으로 알고 소비자가 속아 구매하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품상에 견고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는 ‘원산국 : 중국’, ‘Made in China’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데 귀사에서 질의하신 라벨/태그는 정상적인 표시와 다르게 설명문 중간에 ‘Crafted in China’라고 제조국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CRAFTED는 ‘재주를 부리다’라는 뜻이므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품상에 견고하게 ‘원산지 : 중국’, ‘Made in China’의 방법으로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시되, 동 원산지표시를 기재한 줄에는 다른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하며, 다른 사항을 기재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오인표시로 판단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질 의

- 낚시 바늘세트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회사로서, 국내임금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악화로 원자재 일체를 국내 생산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하여 내수판매 및 제3국으로 재수출하고 있음

Q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조립국이 원산지로 판정되는데 국내 원자재로 중국에서 단순가공한 경우 1) 또는 2)의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한지

- 1) 제조원 : (有)安丘 未來釣具 (Assembled in China) 또는
- 2) Material from Korea, Assembled in China

■ 회 신

- 골프채 등 단순결합물품이 아니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Made in 국가명' 방식의 표시만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Made in China (Material from Korea)는 허용 가능

단, 최종 조립국명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China 표시 인정(Assembled in China(Material from Korea))



■ 질 의

- 주요 부품을 중국에 보내 임가공한 후 국내 수입하여 ○○전자에 납품하며, 동 물품은 휴대폰과 같이 포장하여 스페인으로 수출될 물품임
- Buyer의 요청에 의거하여 Label상에 원산지가 “Hecho en China”라고 표시하는 “Made in China”와 같은 뜻의 스페인어

Q 동 물품을 임가공 후 안국으로 재수입시 문제 발생여부와 스페인어로 원산지표시하는 것이 여락되는지

■ 회 신

- 질의하신 물품이 스페인으로 수출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스페인어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수출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수출되었음이 입증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폰 수출업체를 실사하여 수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질 의

-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보수작업을 하여 통관한 적이 있음

Q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베트남 원산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데 원산지 표시 인정의 여지가 없는 건지

■ 회 신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며“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또는 “Made by 회사명, 국명”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
- 이와 관련,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nam”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아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착된 라벨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Made in Vietnam”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의류상표를 라이선스 받아 중국에 임가공하여 수입하고 있는 있는데, 그런데, 고급이미지를 주고자 상표 및 원산지표시부분을 필기체로 예쁘게 그래픽처리 하여 수입하고자 함

Q 인쇄체가 아닌 필기체 또는 그래픽체도 정상적인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판독하기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 제2항)
- 따라서, 일반 활자체가 아닌 필기체, 이탤릭체 등 특이하게 디자인한 글자체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워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질 의

- 폐법인의 거래처인 (주)○○은 자동차용 점화케이블을 생산하여 ○○자동차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한 후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조립가공 후 점화케이블이 1-5번선 각 번호 가닥별로 포장 재수입하며, 국내에서는 클립에 고정하고 결함사항을 검사한 후 완제품을 생산함

Q 점화케이블의 특성상 연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내 자동차업체에서도 원하지 않는 바 수입당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수입품을 국내에서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당초 수출국이 되며 따라서, 수입당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수입후 제조/가공과정에서 원산지가 제거/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가공업자가 완성이공품에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1항)

■ 질 의

- 중국의 자치지구인 마카오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Made in Macao”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마카오는 포르투갈에서 관할하다 1999년 중국으로 이양되었으나 향후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다만, 국방, 외교, 화폐발행 등의 자치권은 없음)하고 중국과 다른 관세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UN 통계부호표에 “MO”로 등록되어 있고 WTO에 중국과 별도로 가입되어 있음
-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한 지역이나 과거 스코틀랜드와 브리튼이 다른 나라였다는 이유로 “Made in Scotland”를 인정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중국 정부의 1국2체제 선언에 의해 “Made in Hong Kong”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마카오의 경우에도 “Made in Macao”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질 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중 제6호에 명시된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유·무상 구분이 있는 지
- 위호 “견본품”의 범위에 무상제공물품 등 광고용 물품이 포함되는지,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광고용 물품도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회 신

- 수입되는 당해 물품의 용도가 견본용이라면 당연히 금전적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때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견본품”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본보기”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광고용 물품은 원산지표시면제대상인 견본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광고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본 물품은 사용목적상 대량으로 수입될 것이고 이후 일반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광고용선전물품을 제공받는 자도 원산지등 그 품질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광고용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질 의

- 이태리 ○○○ ART사로부터 수공예 은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제품뒷면에 상표 및 성분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음

Q 원산지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안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
-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편의를 위해 관세법 제230조 단서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 후 통관을 허용하였으나 귀하가 신고취하 및 반송신고 수리를 받은 후 아직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관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음

■ 질 의

- 수입신고 후 원산지 미표시로 조사의뢰되고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대외 무역법 위반으로 조서를 받게 되었음
- 과거 2차례 수입시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건은 중국 거래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며

Q 동 물품은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조잡한 것임에도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처벌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불합리

■ 회 신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출입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귀하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의뢰 직후 물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보수작업 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렸으나 세관 직원이 법을 자의로 해석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는 없음
- 앞으로는 물품제조시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고 첫 거래처 등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전에 물품확인을 하시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질 의

- 얼마전 프랑스산 건축자재를 통관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Made in EU”는 안되고 “Made in France”로 해야 한다고 함

Q 공급업체에서는 유럽연합 탄생과 더불어 EU 회원국가들은 자국 원산지를 표시하지 못하고 “EU”로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 신

-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되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프랑스산”, “원산지 : 프랑스” 또는 “Made in France”등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함
- 그러나, “EU”는 국가의 지역경제공동체로서 그 공동체 회원국에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 “Made in EU”로 표기하면 대다수의 일반인이 프랑스산 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로서 제품상에 제조원(회사명, 주소)과 판매원(○○상사)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으나 영어로는 표기되지 않음

Q 국내 주문수량이 적기 때문에 영어, 한글표기를 요구할 수 없는데 이 표기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원산지표시 적정성 사전확인)?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현행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는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되 “원산지 : 일본”, “日本産” 또는 “Made in Japan”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등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함
- 귀사의 수입물품은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일본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적합하지 않음

■ 질 의

-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아래 소모품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최소포장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물품>

- ① 고무제 장갑류, ② 1회용 부직포 마스크, ③플라스틱·고무제의 튜브 및 연결구류, ④플라스틱제 용기, ⑤ 도자제 용기, ⑥ 유리제 용기, ⑦ 철강제 용기, ⑧ 핀셋 등 수공구 등

■ 회 신

-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소모품 포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1항5호에 따라 연구개발용품에 해당되어 실수요자가 수입(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임

■ 질 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원산지고시 제3-5조(현행 제32조)의 원산지표시 면제규정상 실수요자의 범위가 법인번호 단위인지 사업자번호 단위인지

■ 회 신

-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등이 다른 사업자들이 법인번호가 같다는 사유로 하나의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원산지고시 제3-5조(현행 제32조)에서 실수요자는 법인등록번호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구분함

■ 질 의

- 건물을 시공하는 업체로서 그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건설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여부
- 만약, 해당이 되지 아니하면 건설이 제조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건설 재료는 부품 및 원산지료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시공 후 일반개인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것인지 등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원산지판정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의 의미에서 원산지판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제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원산지판정의 대상이 아닌 건물의 건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되는 제조공정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현행 제29조)제4항에 대한 해석 질의

■ 회 신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현행 제29조)제4항에 “약사법·식품위생법·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명·성분 등 사항을 기재하면서 대외무역법령 따른 원산지를 함께 표시할 때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내지 제76조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 타 법령에 따라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로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내지 제76조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타 법령에 따라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다고 하여 무조건 적정표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 공정무역과-1299, 2008.6.3

▶ 민원회신, 2012.5.17

■ 질 의

- 의료용품의 하자 보수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

Ⅱ. 원산지 판정

○ 농림수산물 / 163

○ 섬유가죽류 / 173

○ 생활용품 / 187

○ 기계류 / 205

○ 전자전기제품 / 208

○ 기타 / 222

■ 질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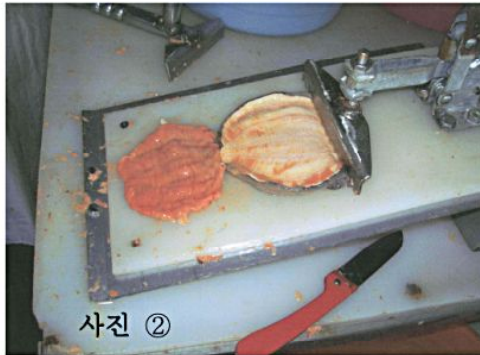
- 수입물품 : 냉동해삼살
- 저희 회사는 캐나다에서 냉동해삼을 중국으로 보내어 현지공장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서 냉동해삼살, 냉동해삼, 건해삼의 제품으로 포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있음
 1. 일단 캐나다산 냉동해삼(HS1605.90-9020)을 작업하기 쉽도록 해동(사진1 참조)
 2. 사진3의 냉동해삼살은 HS0307.99-1910으로서 사진2와 같이 속살을 긁어낸 후(내장은 제거)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시켜서 만들
 3. 사진4의 냉동해삼은 HS1605.90-9020으로서 사진2와 같이 속살을 긁어 낸 후(내장은 제거) 자숙한 해삼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시켜서 만들
 4. 사진5의 건해삼은 HS1605.90-9020으로서 사진2와 같이 속살을 긁어낸 후(내장은 제거) 가열처리하여 건조시켜서 만들

Q 이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상기 3가지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지

■ 회 신

- 제품별 작업공정을 보면 냉동해삼살(사진③, HS 0307.99-1910)은 캐나다산 냉동해삼을 중국에서 해동 후, 해삼의 속살을 사진②와 같이 긁어내어 동해삼의 속살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시킨 것으로 HS세번은 변경되었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5호에 의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바, 원산지는 캐나다이며

- 냉동해삼(사진④, HS 1605.90-9020)은 사진②와 같이 캐나다산 냉동해삼을 해동 후, 속살을 긁어내고 남은 해삼 껍질을 자숙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시킨 것으로 원산지는 캐나다이며
- 건해삼(사진⑤, HS 1605.90-9020)은 사진②와 같이 속살을 긁어내고 남은 해삼 껍질을 가처리하여 건조시킨 것으로 HS세번 변경이 없음은 물론, 가열처리 또한 단순공정에 해당되므로 캐나다가 원산지가 됨



■ 질 의

- 수입물품 : 왕꼬마쥐포
- 베트남에서 쥐치어육을 1차 가공(절단, 조미, 건조)하여 완성한 쥐치포를 태국에서 굽는 공정과 젤라틴 배합공정을 거치는 2차 가공을 하여 포장되어짐

Q 이때 국내로 수입되어지는 제품의 원산지는?

■ 회 신

- 본 건은 베트남에서 쥐치어육을 1차 가공(즉 절단, 조미, 건조)하여 완성한 쥐치포를 태국에서 2차 가공(굽는 공정과 젤라틴 배합공정)하여 최종 포장된다고 하였던 바
- 위와 같이 조미된 쥐치포에 대한 HS세번 확인을 위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조회(전화)한 결과, 1차 가공된 쥐치포의 HS세번이 1604.19.9010 에 해당되며, 2차 가공된 쥐치포 역시 같은 세 번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 최종 쥐치포 완성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이 됨

■ 질 의

- 당사는 원양에서 직접 어획한 참치원어를 중국에 수출하여 껍질과 뼈를 제거(반가공)한 후 살코기만 국내로 반입하여 통조림완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임

Q 이러한 경우 재수입시 적용관계율과 반가공품으로 생산한 통조림완제품의 원산지표기

■ 회 신

-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우리나라의 완전생산물로 보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판정(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1항제4호)하나
- 이 물품이 중국에서 찌거나 삶는 등 제조/가공되어 HS 6단위의 변경(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면 중국을 원산지로 판정함(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
- 다만, 제조/가공에 의해 HS 6단위의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단순 절단”과 같이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수행한 것이라면 원산지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에서 수행되는 가공활동의 정도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122, 2011.2.1

▶ 특수통관과-3256, 2011.9.1

■ 질 의

- ①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해동 → 두절 및 내장제거 → 동결 → 동결 건조 → 뼈 제거 → 자연건조 → 채 찢기 → 선별 → 이물질 제거 → 포장 → 냉동보관의 공정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 황태채 원산지
- ② 원양산 냉동명태를 우리나라로 반입한 후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위의 황태채 가공과정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 ③ 칠레산 자숙오징어를 중국에서 해동 → 1차조미 → 숙성 → 포 뜨기 → 인열 → 건조 → 2차조미 → 숙성 → 선별 · 포장한 조미오징어의 원산지

■ 회 신

- ① 중국에서 황태채 가공 과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제8항에서 정한 일련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 바, 원산지는 러시아가 되며
- ② 위와 같이 중국의 황태채 가공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바, 원산지는 명태를 채집한 해당국이 되거나, 해당국 이외의 영역인 경우에는 선박의 해당국이 원산지가 되고, 황태채를 가공한 중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음
- ③ 조미오징어의 본질적 특성은 생물(자숙) 오징어에 있고, 중국에서의 가공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서 정한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조미오징어의 원산지는 칠레임

■ 질 의

- 모리타니산 냉동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하여 분리·포장하고, 중국에 가서 슬라이스 등 절단하여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 회 신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
-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 질 의

- 볶은 커피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원두 생산국인지, 로스팅 공정을 수행한 국가인지 여부

■ 회 신

- 혼합하여 가공(로스팅)한 커피의 원산지는 아래 사유로 가공국(로스팅국)으로 함이 타당(2012.2.1부터 수입커피에 적용)

- 아 래 -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 원칙 : 실질적 변형을 한 국가(시행령 제61조)
 - 커피는 생두도 중요하지만 기호식품으로 로스팅 공정을 통하여 커피의 본질적 특성이 나타남
- 원산지 관리 : 동일 메이커의 커피라 하더라도 볶는 공정에서 다른 커피 원두를 브랜딩(혼합)하고 있어 생두의 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제조자(수입자)가 임의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확인 곤란
- 국내산업 관련 : 국내에는 커피 재배를 않고 있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질 의

- 미국산 원맥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분쇄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밀가루의 원산지

■ 회 신

- 수입물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며,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 원맥을 분쇄하는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의해 밀가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맥의 생산국인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타당

질 의

- 천일염이나 암염 등의 원료 소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제염을 생산하는 경우 국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재제염은 천일염이나 암염 등의 원료소금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 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으로 불순물 제거 및 염도조정 등을 목적으로 원료소금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가열 등의 방법으로 재결정하는 것으로서 재제염의 제조활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위 재제염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의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물품을 한국산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 재제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달라지는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의 "㉠"과 같은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재제염이 위의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는 동 규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표시 하되, 원료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질 의

- 수입 위스키 원액으로 국내 블랜딩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

■ 회 신

- 몰트위스키와 그레이н위스키 등 수입한 위스키 원액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블랜딩하여 위스키를 생산하는 경우 그 블랜딩 공정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제품생산과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 위와 같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의 ‘국내생산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은 주류 등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입한 위스키 원액으로 국내에서 블랜딩하여 생산한 주류제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임
- 한편, 수입한 위스키 원액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블랜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생산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의 원산지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당초 위스키 원액을 생산한 나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 의

- 중국 A회사와 학생용가방 및 실내화가방 등의 임가공 수출을 하고 있으며, 완제품수량에 맞추어 재단하여 수출한 후, 앞면, 뒷면, 안면커버의 3등분 상태로 수입하여 최종 메인봉제는 자사에서 진행할 예정임

Q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원산지표시여부 및 원산지를 3등분 중 모든 부분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동 건은 우리나라에서 가방 원단을 재단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후 현지에서 3등분으로 봉제한 중간 제품(앞면, 뒷면, 앞면커버)을 재수입하는 경우로서
- 중앙관세분석소가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의 내용에 근거하여 HS4202.92-2000으로 회신하였으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동 중간제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사료되며,
- 원산지표시 여부는 동 중간제품이 동시에 수입될 경우에는 특정 1부분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함

■ 질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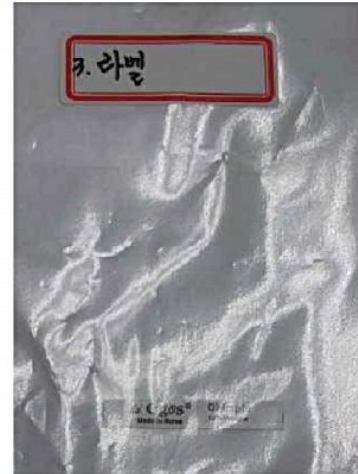
- 수입물품 : HS 6214.30, 100% Polyester Woven Scarf (100*100cm, 90*90cm)
- 당회사는 스카프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이나 최근 봉제공장의 감소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스카프는 원단과 나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가가치의 90%를 차지하며, 봉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함

Q 국내에서 모든 작업을 안 후 봉제만 중국에서 하는 경우 “한국산” 표시가 가능한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3항 및 별표6-2(현행 별표9)의 규정에 의거 HS 6213-6214에 해당하는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등의 기타 편평제품은 제직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제직, 나염 및 재단하였다면 중국에서 가장자리를 봉제 하더라도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판단됨

<국내생산공정 및 수출품 상태>



<수입품 상태>



가장자리를 봉제한 상태임

■ 질 의

- 수입물품 : HS 6203.11-0000 / 6203.31-0000 / 6203.41-0000

Men's Suits / Men's Jackets / Men's Pants

Wool 50%이상 남성용정장

- 바이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거나 우리나라에서 원단을 구매 후 베트남의 자회사(○○)에 제공하여 옆구리, 팔연결부 및 바지단 등이 마무리 되지 아니한 신사용정장 반제품을 생산(재단·봉제 : 40%)한 후 재수입함

Q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상의의 경우 앞판과 뒷판을 연결, 소매를 연결 하며, 바지는 앞판과 뒷판을 연결한 후 허리밴드를 부착하여 완제품으로 봉제가공(60%)한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며, 미국세관 질의외신 (NY K85193, 2004.4.29)에서 원산지가 '한국'으로 외신되었는바 수출 물품에 대한 한국산표시가 가능한지?

■ 회 신

- 미국 국토안보부 NY K85193(2004.4.29) 및 미국관세법 102.21(C)(4)항에서 한 국가에서 생산 또는 봉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의는 어깨솔기를 완성하고, 옆판-뒷판 겹감접합, 안감부착, 소매부착 등이 주요공정이고, 하의는 안감-겹감, 앞판-뒷판겹감 접합, 허리밴드부착, 지퍼가리개 부착 등을 주요공정으로 본다고 규정함
- 품목분류결과 수입품과 가공후 재수출품 모두 HS 6203.11-0000에 분류됨. 따라서, 상기 주요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이 원산지가 되며, 상기 공정 중 일부라도 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이 원산지가 됨

■ 질 의

- 국내 공장에서 컴퓨터기계로 스웨터 부분품(앞판, 등판, 팔, 카라 등)을 평면 형태로 편직한 후 중국공장에서 봉제하여 스웨터로 생산하며, “Knitted to shape in Korea Finished in China”로 표시하여 국내에 수입통관한 후 미국으로 재수출코자 함
- 미국세관에서 스웨터는 편직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하는 바, 위와 같이 표시하여 수입통관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바람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 및 별표6-2(현행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제품형태로 편물되는 의류는 편직공정 수행국,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하는 의류는 봉제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귀사에서 제출한 미국 “Textile & Apparel Rules of Origin” 제11페이지 설명을 보면, “Knit to Shape”란 주요부분(몸통 : 50%이상)이 조립된 것을 말하므로 부분품 형태로 편직된 귀사의 수출물품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중국에서 봉제한 스웨터 완제품 수입시 “Knitted to Shape in Korea Finished in China”로 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다만, 전량 수출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Knit in Korea and Assembled in China”라고 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때는 수출완료 후 그 결과를 수입통관지 세관에 보고하여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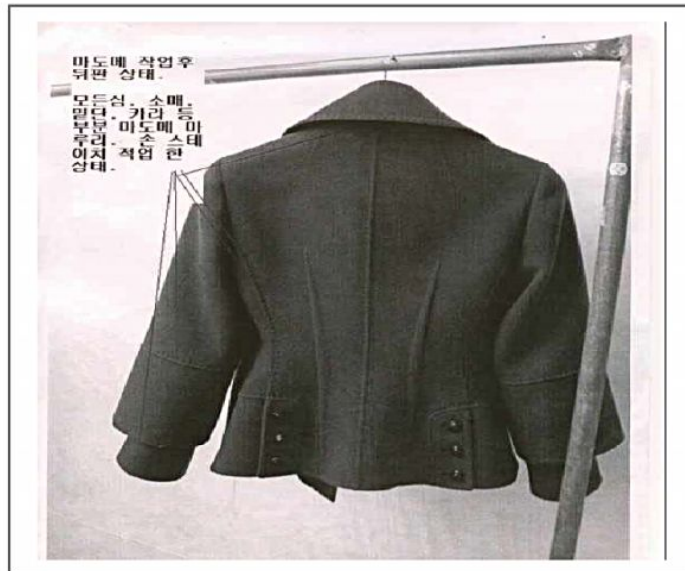
■ 질 의

- 국내 유명업체의 하청을 받아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중국 임가공 무역을 하는데 있어 적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국내에서 모든 의류 제조공정(재단, 봉제)을 마치고 마무리작업(마도메)을 중국에 의뢰하여 의류의 손목, 깃들을 손바느질로 마무리하여 재수입함 (붙임 사진참조)

Q 이때, 연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 회 신

- 국내에서 재단(Cutting -> Parts)과 봉제공정(Assembly)을 마치고 마무리작업만 중국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제3항 및 별표6-2(현행 별표9)(특정물품의 원산지)의 규정에 의거 봉제공정수행국인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됨



■ 질 의

- 대한민국 신발산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업체인 유명제화업체마저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OEM제조해 옴
- 그런데 매장에 가보면 신발안쪽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없으므로 바깥 바닥쪽에 원산지표시 해야 함

■ 회 신

- (주)○○, (주)○○ 제화업체 공히 국내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소요량에 맞춰 밑창, 안창 등 일체를 수출한 후 중국 등에서 임가공(재봉-접합)한 후 원산지 또는 가공국가를 표시하지 않고 재수입하고 있음
 - 수출되는 물품은 신발제조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신발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조립된 완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의 규정에 의거 신발의 세번(HS 6403)으로 분류됨 (관세청 고충처리 47520-1315, 2000.11.21, 산업자원부 인터넷회신 2003.12.20)
 - 신발은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실질적인 변형”으로 보아 해당공정 수행국을 원산국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
 -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임가공국인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단순가공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9호)
- => 2006.1.10일자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은 가죽(HS 41류), 신발갑피(HS 6406), 내피(HS 6406), 바닥(HS 6406 또는 4008)이고 중국에서 신발(HS 6403)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HS가 중국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원산지는 “중국”이 됨
- 한편, 원산지표시를 신발 윗창(안쪽)에 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WTO협정 부속 GATT협정 제9조에서도 과도한 원산지표시요구를 금지하고 있어 신발바깥바닥에만 표시토록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 질 의

- 국내에서 끝 부분이 봉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편직된 양말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수작업으로 끝 부분을 봉제하여 수입할 경우 원산지
 - 수출물품 HSK : 6115.95-0000
 - 수입물품 HSK : 6115.95-0000

■ 회 신

- 봉제를 거치지 않은 양말은 소재, 형태, 디자인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원산지는 편직공정 수행국인 한국임

■ 질 의

- 당사는 각 종류의 양말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최근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바이어의 단가 인하압력이 있으며 국내원재료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편직 후 끝부분을 봉제만 한 상태로 국내로 들여와 포장하려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양말형태로 봉제된 제품의 실밥을 뜯어내고, 짝을 지은 후 상표를 붙여 양말을 포장하는 것임

Q 양말의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지와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본 건 중국에서 편직 및 봉제(봉조)가 이루어져 이미 완성된 양말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원산지는 중국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실밥을 뜯어내고 상표를 붙여 포장하는 작업(세팅, 완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 공정에 해당되어 한국이 원산지가 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절의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시에 중국산(CHINA)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형포장(벌크)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포장시 정해진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질 의

<○○의류산업협회>

- 산업자원부의 명백히 잘못된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의류제조업체가 줄도산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짐
- 의류공정 중 재단의 비중은 5%에 불과하며 WTO규정 및 OECD국가 대부분 의류의 원산지기준은 봉제공정 수행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단 공정 수행국임
- 세관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시 “cutted”라는 표시만 되면 한국산으로 둔갑되며, 이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함

<수입업자>

- 국내생산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중국생산하여 재수출함
- 생산단계에서 “made in Korea”로 부착하는데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수출물품이란 증명만 되면 수출지원과 역행되는 세관단속은 지양하여야 함

■ 회 신

- 국내인건비 등 문제로 섬유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든 상태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쿼터가격문제(중국 1.3불/m²) 및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제3국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시 수출실적에는 도움이 되나 국내의류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통상마찰 및 대외신인도 하락문제 발생
 - 따라서, 중국산의류의 원산지판정에 대해서는 섬유산업협회 등 제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제통상관계 및 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 2004.3.1부터 의류 봉제기준 적용 변경(2003.12.13 산자부고시)

■ 질 의

- 제3국의 요청에 의거 중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제작된 의류를 수입검사시 대외무역법위반등으로 조사의뢰 까지 하는데 수출업체에서 수출하기 위한 물품을 죄인취급까지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보수작업만으로 끝내주시기 바람

■ 회 신

- 오늘날 상품의 생산방식은 급속한 국제적 분업조직을 이루어 가고 있고 상품 생산 및 거래에 관여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또는 그 국가산으로 오인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원산지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소비자보호와 무역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미표시, 오인표시 및 허위표시된 물품의 수출입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품은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제3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것도 대외무역법상 금지되고 있으며 처벌대상에 해당됨
- 이렇게 관련 법령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소비자보호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불공정무역국가로 취급함으로써 불필요한 무역마찰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임
- 따라서, 갈수록 대외무역환경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 국가전체의 무역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산업자원부 수입55250-32, 2002.2.19

▶ 수정 대외무역관리규정 2003.12.13(산자부고시제2003-81호)

■ 질 의

- 당사는 북한 신의주 타올공장에서 타올을 하청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방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본건은 통일부에서 회신

- 또한 ①메리야쓰원단을 중국에서 재단하여 상표, 고무줄 등 일체의 부품과 같이 북한으로 수출하여 북한에서 제조하는 경우와, ②원단을 북한에서 재단하여 북한에서 봉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 회 신

- 질의하신 메리야쓰장갑(HS 6116-92-9000)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의 규정에 의거 “봉제공정 수행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 질의 ①의 경우 재단을 중국에서 했어도 봉제공정이 북한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북한이 원산지가 되며,(수정 2004.3.1)
- ②의 경우 재단과 봉제공정이 북한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북한이 원산지가 됨

■ 질 의

- 당회사는 서울 및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코트, 자켓 및 유아복 등을 제조 유럽/일본등지로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원단업체에서 구매한 원단을 재단하여 반제품형태로 중국에 수출 후 해외봉제 후 재수입하여 포장을 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다만, 겹감은 재단하여 수출하나 안감(lining), 심지(inter-lining), 실(sewing thread) 및 끈(string)은 재단을 할 경우 오히려 심하게 풀리거나 수축으로 인해 봉제시 절단하는 바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정도 됨

Q 이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세번은 의류세번인지 아니면 의류부속품인지 여부와 재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되는지, 재수입시 감면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본건 수출물품이 수입물품(의류)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미완성제품이라 간주되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의류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재수입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의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2(현행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재단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재단되지 않은 부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 2004.3.1부로 봉제국을 원산지로 판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산자부고시 제2003-81호, '03.12.11)
- 품목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입현품, 가공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질 의

- 넥타이 전문업체로서 넥타이의 구성품인 재단된 넥타이 겹감을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에서는 나머지 구성품인 심지, 안감등을 자체 조달하여 넥타이 완성품을 만들어 재수입하고 있음
- 넥타이의 주요 구성품과 가격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 겹감(semi-products) : 실크, 폴리에스터 56-80%
 - * 안감(lining) : 아세테이트 4-6%
 - * 심지(inter lining) : 폴리와 이크릴 혼용 5-11%
 - * 라벨, 택, 임가공비 등 12-24%



이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연행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Korea로 알 수 있는지?

■ 회 신

- 넥타이는 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으로 표시할 수 없음
- 재단된 직물은 넥타이의 모든 원부자재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넥타이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질 의

- 대리석을 생산가공하여 주로 관공서 현장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본사소유 광산에서 생산한 석회성분의 대리석원석을 중국의 가공공장으로 보내 건축 자재용 판재로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으로 국내로 수입

Q 이 경우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 회 신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공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물품의 원산지로 판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2항에 의거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귀사가 국내에서 채취한 대리석은 HS해설서에 의하면 세번이 2515.11에 해당되고 중국에서 건축용 자재로 제조 가공한 대리석은 6802.21에 해당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므로 귀사가 중국에서 제조 가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건축자재용 대리석의 원산지는 중국이 됨

■ 질 의

Q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

[답론] 안경테의 원산지인 A국을 선글라스의 원산지로

- 안경테와 렌즈를 결합하여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것은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의 단순 가공 활동에 해당하고, 시력교정용이 아닌 이상 렌즈보다 테의 부가가치가 높으므로 테를 생산한 A국이 원산지가 되어야 함

[율론] 테와 렌즈를 결합하여 선글라스를 생산한 C국을 원산지로

-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2항에서 HS6단위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렌즈는 9001, 테는 9003, 선글라스는 9004에 분류되므로 선글라스를 조립하여 HS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C국이 원산지가 되어야 함

Q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 대상여부

[답론]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님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5조(현행 제32조)제1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세점에서 판매하여 해외로 반출될 물품은 수입물품이 아니므로 표시대상이 아님

[율론] 면세점에서 판매할 물품이라도 원산지표시대상임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4호 가목에서 수입이라 함은 매매 등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고,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에서는 수입될 때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판매할 물품도 표시대상임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에서 물품의 원산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HS 6단위가 변경된 국가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A국산 안경테와 B국산 렌즈를 C국에서 조립한 경우로서 그 과정이 단순하다면 'Frame made in A국, Assembled in C국'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렌즈를 안경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깎고 다듬는 공정을 거쳐 선글라스로 실질적변형이 이루어진다면 'Made in C국'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경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렌즈를 조립한 경우는 제외)
- 아울러, 수출용물품에 대해서는 허위/오인표시만 금지할 뿐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될 물품이고 수입통관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 질 의

- 당사는 국내에서 타포린 원단을 생산하여 중국 청도에 봉제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000만불이상 수출하는 기업임
- 국내 석유화학업체로부터 HDPE, LDPE를 구매하여 Roll형태의 타포린원단으로 제조한 후 중국현지법인에 후가공작업에 소요되는 Eyelet, Rope, Poly Bag, Label, PP Tape등과 같이 공급하여 자동차 덮개 천막 등으로 제조하여 수입하고 있음

Q 이때,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가공비는 총 제조원가의 5-6%수준에 불과한 단순공정으로 판단되는 바 위 천막 개수입시 “국산”으로 표시 가능한지

■ 회 신

- 본 건 폴리에틸렌제 롤상태의 직물인 수출물품은 HS 3921.90-1000, 타포린 차양막으로 완성된 수입물품은 HS 6306.12-0000으로 결정되었으며(관세평가 분류원 품목분류과-2545, 2005.11.11),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현행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제단공정수행국”이 원산지가 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국내생산 직물이라도 중국에서 제단하는 경우 “원산지는 중국”이 됨

■ 질 의

- 국내에서 악기를 제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회사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부 악기업체가 악기의 몸통과 네크(Neck) 만을 수입하여 국내공장에서 최종 조립한 후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는 국산으로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상기와 같이 제조하는 경우에는 “Built Made in U.S.A”와 같이 반드시 조립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 임가공 회사들이 수입하는 물품은 완제품의 60%이상 제조된 상태이며,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임가공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국내업체 보호와 소비자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라도 원산지표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6조)의2는 수입원료(부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과 적용대상물품을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이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이상일 때에는 국산으로 표시 가능 (2006.4.1 추가적용)
- 아울러, 귀사에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06.1.10 산업자원부(수출입과)에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대상 물품을 확대하였고, 통관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세관직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으로서 국산으로 인정될수 없음에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국산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지부 포함) 표시광고과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음

■ 질 의

- 점착테이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최근, 국내인건비의 상승으로 국내산 PVC블록쉬트를 중국공장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비닐Pet필름에 점착제를 도포한 후 국내산 PVC블록쉬트와 결합시킴
- 이렇게 만들어진 점착테이프 롤을 재수입하여 국내에서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절단(너비 100cm를 19cm로 5등분)하여 Roll로 감아 포장함

Q 이때,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 회 신

- 본 건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과-104384, 2006.6.2)의 품목분류 회신에 의하면 국내수출물품(PVC Sheet)은 HS 3920.43, 중국에서 PET필름에 점착제를 도포하여 생산한 점착테이프 원단은 HS 3919.90, 국내에서 절단하여 최종 포장한 점착테이프는 HS 3919.10에 분류한다는 회신이 있었음
- 그러나, 국내에서 절단 후 포장하는 가공과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제5호 카목에 해당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으며(국내부가가치도 51%에 미치지 못함)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한 중국이 원산지가 되는 것임

■ 질 의

- 독일본사로부터 아이새도우 벌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반고체상태로 성형 후 국산 화장품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Q 이때, 국내에서 제조 후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는?

■ 회 신

- 본건 우리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의뢰한 결과 수입물품(미성형 아이새도우)과 국내가공 후 완제품 모두 HS 3304.20-1000에 분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품목분류과-248, 2005.2.11.).
- 따라서, 귀사가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HS 6단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즉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는 “독일”이 됨. 다만, 국내에서 소분·성형이 이루어진 사항은 표시할 수 있음

■ 질 의

- 카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인건비관계로 당사 국내공장에서 카드 형태로 인쇄한 종이(A3, 카드 3장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청도 현지공장에서 카드형태로 자르고 금박으로 인사말을 넣어 재수입하고 있음

Q 중국에서 3장으로 재단, 구멍뚫기 및 일부금박공정이 있으나 가공의 정도가 매우 단순한 공정이므로 “Made in Korea”로 원산지표기암이 적정인지 여부

■ 회 신

- 동사에서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 결과 수출입물품 모두 HS 4909.00-0000에 분류된다는 회신이 있었고
-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임가공비는 물품제조원가(FOB)의 27%에 불과하므로 국내에서 실질적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산으로 표시 가능함

■ 질 의

- 본 회사는 보온병 형태의 기능성 머그컵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임
- 이때, 기능성 머그컵 제조에 사용되는 스텐레스제 몸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산 고무제 캡을 부착하여 제조함

Q 이 경우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본건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한 결과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머그컵은 HS 9617.00-8000에 분류하고 스텐레스제 머그컵의 본체는 HS 9617.0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음
- 따라서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변형을 행한 국가는 HS 6단위 세번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중국이므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함

■ 질 의

- 당사는 일본산 부품(9209.99-0005)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플루트 (9205.90 -1010)를 수입하고 있음
- 제조단계 원자재 생산(일본 : 100%) → 경우에 따라 분할하여 수출신고 →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서 단순조립 및 광택 → 말레이시아 물류창고 집결 → 본사(일본)에 주문하면 말레이시아(물류창고)에서 수출절차 진행
- 원가구성
 - 원자재가격(FOB JP \$80.47) + 노무비등 기타 비용(운송, 조립, 광택, 포장 : \$31.30) ==> 제품원가 USD\$ 111.77 ==> 수입신고가 \$ 165 /ea
-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3호의 단순가공활동만을 수행하므로 원산지는 일본국이어야 한다고 사료됨

■ 회 신

-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품생산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실질적변형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HS세번 변경기준(HS 6단위 기준)으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게 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의뢰하신 플루트의 경우, 제조공정을 통하여 HS 6단위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나 일본으로부터 부품이 전량 공급될 때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하고 광택을 내는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판단되어, 동 품목의 원산지는 일본이 됨(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가 참조)
- => 2006.1.10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관세율표해석통칙 제2호가(미완성완제품)의 개념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각의 악기에 사용된 부분품은 HS 9209에 분류되고, 플루트는 HS 9205에 분류되므로 악기를 조립한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로 됨
- 단, 위 판정은 귀사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 판단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질 의

- 당사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에서 제조된 1회용 플라스틱 가스라이터의 모든 부품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조립하고 Gas를 주입함

Q 이 경우 원산지는 어디인지, 중국산에 대한 덤핑방지관계 적용은 피할 수 있는지?

■ 회 신

- 중국산 부분품(HS 9613.90)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가스라이터(HS 9613.20)을 생산한 경우 원칙적으로 베트남이 원산지가 되나(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베트남에서의 수행공정이 가스라이터로서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공정인 경우 중국이 원산지임(동조 제74조 제4항)
-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인쇄/각인 등의 견고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현행 제75조) 내지 제6-2-5조(현행 제78조))

■ 질 의

- Marlboro, Parliament, Philip Morris, Virginia Slim 등의 담배제품에 대한 제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회사임
- 미국의 계열회사에 제조위탁하여 생산된 담배를 한국에 수출할 때 다음과 같이 제조국 아래 회사명과 본사주소를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Made in U.S.A

for Philip Morris Products S.A., Neuchatel Switzerland TP-7-VA

■ 회 신

-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은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국명/주소/전화번호가 표시된 경우 등 원산지 오인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가까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4조(현행 제77조))
- 본건 담배에는 원산지가 아닌 본사 주소(스위스) 및 상호가 표시되어 있어 원산지 오인우려 표시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오인요소와 가까운 곳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로위에 줄을 달리하여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표시로 인정

■ 질 의

- 상기자는 국내 자사에서 생산한 볼펜 등의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조립하고 볼펜 등 그 완제품(40피트 컨테이너 1대 물량으로 80만개)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원부자재 수출시 현품에 인쇄된“Korea”표시로 인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 수입통관을 위하여 세관으로부터“Korea”표시 삭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수량 및 제품 특성상 삭제가 시간적·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따라 중국으로 반송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신고를 하였음
- 그러나 ○○세관에서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님에도“Korea”로 표기되었다는 사유로 “Korea”표시를 삭제하고 반송할 것을 지시 한바, 질의자는 모든 원부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점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전후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청 차원에서의 결정을 요구

■ 처리방안 검토

- 본 건은 볼펜 등의 모든 원부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조립을 위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건이며, '06.1.10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세율표 통칙 2에 의하여 볼펜 등 완성품 세번으로 수출이 가능하여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기 할 수 있었던 사례이며
- 실제 본 제품 들을 조립하기 위하여 '06.1.10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원부자재가 수출된 사실이 있고 “Korea”표기의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중국으로 반송하고자 수입신고를 취하하였음에도 여전히 “Korea”표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반송도 불허한다는 조치는 원부자재 및 모든 공정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Korea”를 표기한 사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6-2조(현행 제52조)에도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송·폐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4항에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우리와 다를 경우에는 수입국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우리와 달리 HS 4단위를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제품이 중국에서는“Korea”가 적정 원산지표시인바, 본 건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Korea“표시 삭제 없이 반송할 수 있도록 질의자에 회신하고 해당 세관에 조치토록 하고자 함

회 신

- 본 건은 볼펜 등의 모든 원부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단지 조립만을 위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건이며, '06.1.10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원부자재가 수출된 사실이 있고, 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리와 달리 HS 4단위 변경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국의 규정으로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이 적법한 바,
- 상기 사실을 감안하여 “Korea” 표시 삭제 없이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375, 2010.3.12

▶ 특수통관과-959, 2010.3.15

■ 질 의

- 한국산 골프공 내부코어(Core)를 미국에서 완제품인 골프공으로 제조하는 경우, 완제품을 제조·가공한 최종국가인 미국에서 골프공의 원산지를 결정할만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HS code : 골프공 반제품(Core) : 9506.32-0000
골프공 완제품(Golf ball) : 9506.32-0000

- 골프공 제조공정

Core 제작 재료준비→Core 주조→Core 연마/세척→골프공 반제품(Core, 미국으로 수출)→우레탄 커버 주조→연마→표면 코팅→마킹(로고 등 인쇄)→최종 검사→포장→완제품(한국 수출)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의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해당국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골프공 반제품(Core)과 골프공 완제품 세번이 동일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골프공 반제품(Core) 생산국이 원산지 국가가 됨.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1조제3항에서는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여부를 최종 검토한 결과,
- 골프공의 제조공정에 있어 '우레탄 커버' 제조공정은 회전성과 컨트롤성 터치감의 차이를 결정하는 공정이기는 하나, 'Core'제조공정에서의 재료의 배합비율 및 압축률에 따라 탄성도(비거리)가 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ore' 제조공정에서 주요 기술력과 공정의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우레탄 커버' 제조공정을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산 골프공 반제품(Core)를 수입하여 골프공 완제품으로 제조 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 해당 골프공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 의

- 미국에서 화장품 내용물을 별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용기에 넣어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 단순가공국은 대외 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 따라서, 미국산 화장품 내용물을 국내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하는 경우 원산지는 당초의 원산지인 미국으로 표시되어야 함

■ 질 의

- 일본산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케이스 등 기타부품과 함께 조립하여 시계를 완성하는 경우
- “Mov’t Japan, Assembled in China” 또는 “Mov’t made in Japan, Assembled in China”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 회 신

- 일본산 무브먼트(HS 9108~9110호) 등을 중국에서 HS9102호의 완제품 손목 시계를 조립, 생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HS6단위 변경)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원산지 판정절차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는 “Made in China”임.
- 다만, 무브먼트의 출처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Mov’t made in Japan, Assembled in China”의 표시방법도 가능함.

■ 질 의

- 드라이버 손잡이(프라스틱)부분은 미국에서 제조한 후 대만에서 대만산 드릴 비트 부분과 결합하여 드라이버 생산 후 국내로 수입
- 제품표시사항
 - * 손잡이 표시 : ○ ○ II 4850, Made In U.S.A.(음각)
 - * 드릴비트 표시 : Made In Taiwan (불변잉크)

Q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적쟁안지?

■ 회 신

-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법 제229조제1항제2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된 국가가 원산지이며,
- 프라스틱손잡이(HS 3926.90)와 드릴비트(8205.40)를 결합하여 스크류드라이버(8205.40)를 생산하는 경우 드라이버(드릴비트) 생산국가에서 실질적변형(6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났으므로 대만이 원산지이며, 제품상 “Made in USA”는 삭제하고 상표 밑에 음각 또는 불변잉크 등으로 원산지(Made in Taiwan)를 표시하여야 함

■ 질 의

- 톱날등 목재가공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일본으로부터 철판, 박스등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일본으로 할 수 있는지? (이때,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가능함)

■ 회 신

- 제조공정이 2개국이상에서 수행되거나 2개국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물품의 “실질적변화”가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바, 실질적변화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HS 6단위 세번변경을 원칙으로 하며 HS가 변경되더라도 단순조립·포장 등 단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음(대외무역법시행령 제52조내지 제58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 귀사의 경우 일본에서 톱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포장, 광택등 단순공정만 이루어지면 일본이 원산지가 될 수 있으나, 일본산 철판으로 중국에서 톱날을 세워 톱을 생산한 경우 중국이 원산지가 됨
- 중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일본을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세관에서는 원산지심사를 하게 되는 바 이때 원산지증명서 및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공정내역서, 관련 자료등 원산지입증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음

■ 질 의

- 태국산 예초기용 엔진,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된 클러치 하우징 등 예초기용 부분품을 사용하여 제3국(일본, 태국 등)에서 완제품인 예초기를 제조·조립하는 경우 원산지가 예초기 완제품 제조국인지 여부
 - 엔진 HSK : 8503.00-2000
 - 부분품 HSK : 8433.90-2000
 - 예초기 HSK : 8433.20-2000

■ 회 신

- 제조원가에서 엔진 부분이 약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예초기의 기능은 엔진을 비롯한 기타 부품이 완제품으로 조립되었을 경우 완전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 최종 완제품 조립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임

■ 질 의

- 원산지표시 : 여러 별이 들어있는 포장박스에만 표시
 - 본 물품은 시중 유통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구역에서만 사용하는 1회용품임
 - 또한, 폐기용량 축소를 위해 90℃에서 용해되므로 현품에 스티커나 인쇄를 할 경우 불순물 증가로 이온교환처리에 차질이 우려됨

■ 회 신

- 관세평가분류원 조회결과 수출되는 물품은 HS 5911.90 및 4823.90이고, 수입되는 물품도 5911.90호에 분류되므로 중국에서 HS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이미 필터의 형태를 갖추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산 종이 테두리를 붙이는 공정만 수행하며, 제조원가 대비 테두리는 8.3%, 임가공비는 1.5%에 불과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단순공정으로 판단됨

■ 질 의

- ○ ○ 전자 단말기팀(유무선전화기 제조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바 당회사는 '02년부터 중국에서 나사를 조이지 않은 전화기를 일명 원자재로 들여온 후, 국내에서 나사를 조이고 약간의 품질검사를 한 후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하여 국내 할인점 등에 판매하고 있음

Q 이때, 전화기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국내에서 약간의 가공만 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 회 신

- 귀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유무선전화기용 부품품이 수입신고 당시 완성된 전화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미조립 상태로서 완성품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국산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현행 제85조) 참조)

=> 2006.1.10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의2(현행 제86조) 개정에 따라 HS 6단위가 변경되고 제조원가기준 국내부가가치가 51%이상인 경우 이거나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제조원가 기준 국내부가가치가 85%가 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중국에서 생산한 유무선 전화기의 부품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림(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4항 참조)

■ 질 의

- 본 통신회는 이동전화 관련 주변기기 및 악세사리 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들의 모임으로서 이동전화 충전기 부분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제조가공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질의함
- 1) 이동전화충전기 구성품을 3가지(PCB어셈블리, 케이블 어셈블리, 사출물류)로 나누어 중국에서 수입 후 조립하여 판매할 경우 원산지
 - 2) PCB어셈블리를 중국에서 수입 후 국내부품(케이블, 사출물)과 조립한 경우 원산지
 - 3) PCB어셈블리에 들어가는 중요부품(IC, 트랜스)을 한국에서 공급하여 중국에서 PCB완성품을 만들어 재수입후 국내부품 사출물과 중국부품인 케이블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 회 신

- 1)
 - 제시된 견본으로 볼 때 사실상 완제품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당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원산지표시가 수입후 단순가공과정에서 제거/은폐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1항제1호)
 - 한편, 수입당시 완제품에 가까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입후 단순한 가공을 거친 물품의 경우에는 “가공국(조립국) : 한국”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제4항)
- 2), 3)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입과(02-2110-5336)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02-504-9474-5) 소관사항임

■ 질 의

- 고분자콘덴서를 연구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로 알루미늄 고분자콘덴서의 제조공정은 크게 반소자제조, 반소자에 고분자주입, 1차제품 조립, 2차제품 조립, 포장의 과정으로 구성됨
- 이때 반소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공정인 고분자 주입을 하여 1차 조립한 후, 장비를 이용한 2차조립은 해외에서 실시하여 국내포장함

Q 이때,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 회 신

- 2005-3차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불임과 같이 본건 수입품(미완성) 및 최종제품에 대하여 모두 HS 8532.22-0000으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수입품(권취 후 반소자제품A)을 추가로 가공한다 하더라도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즉,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후의 콘덴서의 원산지는 권취 후 반소자 제품(A)를 생산한 국가(홍콩 또는 중국)가 됨

■ 질 의

-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전자(유)와 임가공 방식으로 수출입을 하고 있음
- 당사에서 ○○보일러에 납품할 온도조절기를 제조하고자 국내에서 대부분 국산인 원자재를 구매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후 재수입할 때 단순가공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으로 할 수 있는지?
- 또한 해외 임가공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관세평가분류원 2005-2차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귀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미완성 완제품)과 중국에서 완성 후 수입하는 물품의 HS번호가 9032.10-1090으로 동일한 것으로 결정
- 따라서, 중국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즉, 실질적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완성되어 수입되는 온도조절기의 원산지는 한국이 됨
 => 2006.1.10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개정에 따라 2006.4.1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관세율표해석통칙 제2호가(미조립완제품)의 개념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되는 부분품이 각각 IC(HS 8542), PCB(HS 8534), 케이스(HS 3926)에 분류되고 중국에서 온도조절기(HS 9032)로 실질적변형이 일어나므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출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19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됨

■ 질 의

- 메탈할라이드램프 등 고부가가치 전구를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회사로 램프의 중요 핵심부품인 내관(Arc Tube)은 당사 국내공장에서 제조하고 품질에 영향이 없는 외구조립작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전선연결부 마감작업하여 포장하고자 함

Q 이때, 램프를 “Made in Korea”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회 신

- 귀사가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은 HS 8539.90-2000에 분류되고, 동 수출물품이 중국에서 추가 가공된 후 수입되는 물품은 완제품이 분류되는 HS 8539.32-3000에 분류된다는 우리청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이 있었음(제2005-1회 품목분류협의회)
- 따라서,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중국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즉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되며, 비록 국내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의 단순가공에 해당되어 “한국”으로 원산지를 부여할 수는 없음
- 한편, 질의물품과 같이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적인 단순가공을 거쳐 완성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수입당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현행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최종 완성된 제품에 “Made in China” 또는 “원산지 : 중국”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

■ 질 의

- 국내에서 MP3플레이어의 주요부품인 조립된 Top Module (256Mb) + LCD, Bottom Module, 플라스틱 Case를 수출하며, 중국에서 스크류 등을 더하여 조립한 후 USB Cable, User CD, Manual, 이어폰 등 필요 악세사리(중국산)를 조합 포장하여 수입함

Q 수출물품은 완제품/부분품 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Q 안국산 부품 88%, 중국산 부품 12%로 중국에서 조립한 경우 원산지, 과세표준 및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세관계는?

■ 회 신

- 귀사의 미조립 수출물품은 MP3플레이어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완제품이 분류되는 8527.13-9000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이 있었음
- 따라서, 귀사의 수출입물품 모두 8527.13-9000에 분류되어 한국에서 수출된 후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는 한국이 됨. 다만, 우리나라에서 최종 조립된 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아래에 “조립국 : 중국”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6.1.10일자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4.1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관세율표해석통칙 제2호가(미완성완제품)의 개념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출되는 부분품이 각각 모듈(HS 8529), IC(HS 8542), 케이스(HS 3926)등으로 분류되고 중국에서 MP3플레이어(HS 8527)로 변경되므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함
- 해외임가공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출물품가격, 임가공비(중국내 물품구입비 포함), 왕복운송비, 보험료, 기타 임가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합하여 결정되며,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관세법 제10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경감)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 질 의

- 당사는 스피커를 생산하여 국내 내수판매 및 수출하는 회사임
- 중국산표시보다는 한국산표시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거의 중국에서 생산한 후 국내에서 앞부분 철망과 뒷부분 판넬의 나사를 국내에서 조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

Q “made in Korea” 또는 “assembled in Korea” 표시가 가능한지

■ 회 신

- 원산지는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대외무역법 제24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내지 제6-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이룬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실질적 변형”이란 주로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HS가 변경되더라도 단순조립/건조/포장 등 단순 공정은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7항,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
- 따라서, 중국산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는 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디자인한 후 스피커는 우리나라산, 나무케이스는 베트남산, 철망/케이블은 중국산 등 여러 나라 제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조립/본드마감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국내의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일반관리비, 홍보비 등 간접비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가 넘는다면 국산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국내산 자재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람

■ 질 의

- 당사는 핸드폰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원가절감을 위해 충전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대부분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하여 완성된 핸드폰충전기를 재수입하는 임가공무역을 하고 있음
- 수출시 HS를 핸드폰충전기 세번인 8504.40-3010, 거래구분은 임가공(29)으로 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재수입시 원산지는 한국(KR)으로 표시하고 HS는 수출신고시와 동일한 세번으로 신고하고 있음

Q 중국에서 수출시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정확한 원산지는 어디이며, 중국세관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 신

-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충전기 부분품 수출시 완제품에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관세평가분류원 042-930-3630 문의), 귀사에서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출시 신고한 품목 분류가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2006.1.10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 개정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2호가(미조립 완제품)의 개념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각의 부분품이 제품생산국가에서 HS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어 실질적 변형이 있다면 원산지는 중국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의 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볼 수 있음

■ 질 의

- 네덜란드로부터 칼날, 망, 모터, 기어(모터에 부탁), 기어휠(기어와 날을 연결)을 공급받아 중국공장에서 Case 및 충전بات데리 등을 구입 및 조립하여 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고 있음
- 관세법 제229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제조공정을 거친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HS 6단위가 다른 품목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Q 2001-7외 품목분류실무위원외 결정사항 01-7-22(전기면도기)에서 접속자/보호캡 등 등 부분품이 분해되어 제시된 경우 완제품 세번으로 보며, 02-7-22(전기다리미)에서 Sole Plate만 제시된 경우라도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면도기의 주요 부품을 공급한 네덜란드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

■ 회 신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물품의 원산지로 하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 이때, “실질적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변경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제2항) 이 경우에도 단순조립 등 단순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 질 의

- 휴대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휴대폰(CDMA방식)의 부품을 수출한 후 해외국가에서 단순임가공(조립), 역수입하여 국내판매시 조립국가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한국으로 원산지표시 또는 국내업체명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단, 부품은 제3국 도입자재 및 한국산부품을 구입하여 수출)
- 이 경우 해외국가에서 부가가치 발생분은 임가공비 뿐으로 제품개발, 부품 sourcing 등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많은데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 회 신

-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물품을 해외에서 단순가공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므로 “made in Korea”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며(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현행 제82조)제1항제9호), 이때에는 국내업체를 제조원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제조원표시가 원산지 표시를 대신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부품을 수출하여 조립/테스트/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외국가에서 조달되는 부품의 유무, 공정의 난이도 및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내역설명서/원가계산서(BOM) 및 수출입물품 등을 구비하여 우리청 또는 산업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해외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처럼 표시(made by ○○ electronics)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오인표시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해석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2006.1.10일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 제2항 개정에 따라 2006.4.1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관세율표해석통칙 제2호가(미완성 완제품)의 개념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각의 부분품이 제품 제조국가에서 HS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를 판단하게 됨

■ 질 의

- 한국산 셀과 중국산 셀을 사용하여(구성비율 1:1) 중국에서 팩공정으로 배터리팩을 완성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 질의

■ 회 신

- 한국에서 생산된 Cell, Case Top, Holder, Bottom과 중국산 PCM, Tape 등 부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가공을 수행함으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됨.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 8507.80, 8507.90)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8507.80) HS 6단위가 상이*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 * HS 8507.80, 8507.90 → HS 8507.80
 - ** 팩 가공은 전지 셀에 보호회로등 부품을 용접·조립하는 공정으로 단순가공으로 보기 어려움(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642, '11.11.08)
- 원산지 판정절차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는 “Made in China”임. 다만, 셀의 출처를 모두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Cell made in Korea, China, Assembled in China” 표시도 가능함

■ 질 의

- 전기안마의자(PCB ASSEMBLY 없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국산 PCB ASSEMBLY를 삽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 회 신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 이와는 별개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원산지표시의 의무가 없는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실질적 변형)의 공정을 거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산"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와 제86조 적용대상의 구분은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제조공정이 단순한"결합" 수준의 공정인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수준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수준의 공정인지가 핵심적인 구분기준이 되며, 질의 사례와 같이 전기안마의자에 PCB ASSEMBLY를 장착하는 공정은 ①누구나 전문적인 기술보유 없이도 결합이 가능한 단순 장착공정인지 ②PCB ASSEMBLY의 기능에 따라 전기안마 의자의 성능 및 품질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공정 또는 실질적 변형 공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전기안마의자와 PCB ASSEMBLY의 결합이 가능하고, PCB ASSEMBLY가 전기안마의자의 성능이나 품질적인 차이와 연관 없는 단순히 전기안마의자의 “구동”의 기능만을 담당할 경우, 질의사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전기안마의자와 PCB ASSEMBLY와의 결합작업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PCB ASSEMBLY의 기능에 따라 전기안마의자의 성능 및 품질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질의사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표시방법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함

■ 질 의

- 당사는 전기제품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인건비 상승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에 주력하므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함
- 얼마 전 동종업체 중 한 업체가 중국에 진출한 후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재수출하고 있는 바 제품 및 포장상에 “Made in Korea”표시를 하고 있다고 함
- 이렇게 한국을 경유하면서 수입통관절차는 없다고 하나 선박만 Trans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세법등 법령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함

■ 회 신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230조에서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 유치하여 시정조치를 마친 후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중국에서 제조하면서 “우리나라산”처럼 허위표시하는 업체를 아시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에 수입자/수출(제조)자/운송(포워딩)업체명 및 선적일시 등 관계정보를 신고하여 주시면 검사대상으로 선별 및 위법사항 적발시 의법 조치토록 하겠음

■ 질 의

Q 한국산 원재료를 외국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입 후 한국에서 포장하는 경우로서 한국에서 수출되는 원재료와 외국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물품의 HS가 동일하다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HS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실제 판매가능한 공정이 외국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외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3조(현행 제33조) 내지 제25조(현행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변화가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정 수행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음
- 즉, 수출입되는 물품과 외국에서 가공되는 정도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바 정확한 원산지결정을 위해서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현품) 및 다음의 자료를 필요로 함
 - 가. 제조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공정내역설명서 등)
 - 나. 투입원재료 사용내역 파악자료(BOM 및 원가계산서 등)
 - 다. 기타 참고자료
- 대부분 원재료와 수입품의 HS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국이 원산지가 되지만 자수제품 등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제품과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물품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6-2-1조(현행 제85조) 내지 제6-3-5조(현행 제8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질 의

Q 중국산 40%, 대만산 40%, 홍콩산 20%의 부품을 사용하여 홍콩외사에서
완성한 제품을 수입시 원산지표시는 어느 곳으로 해야 하나요?

■ 회 신

-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6-3-1조(현행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2개국
이상이 제품생산에 관련된 경우 품목에 따라 의류 등은 “주요공정기준”,
카메라는 “부가가치기준” 기타품목은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김태영 과 장
최형균 사무관
장은수

발행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 302 - 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042 - 481 - 7644

인쇄처 (주) 협 통 문 고
TEL) 042 - 534 - 6188

